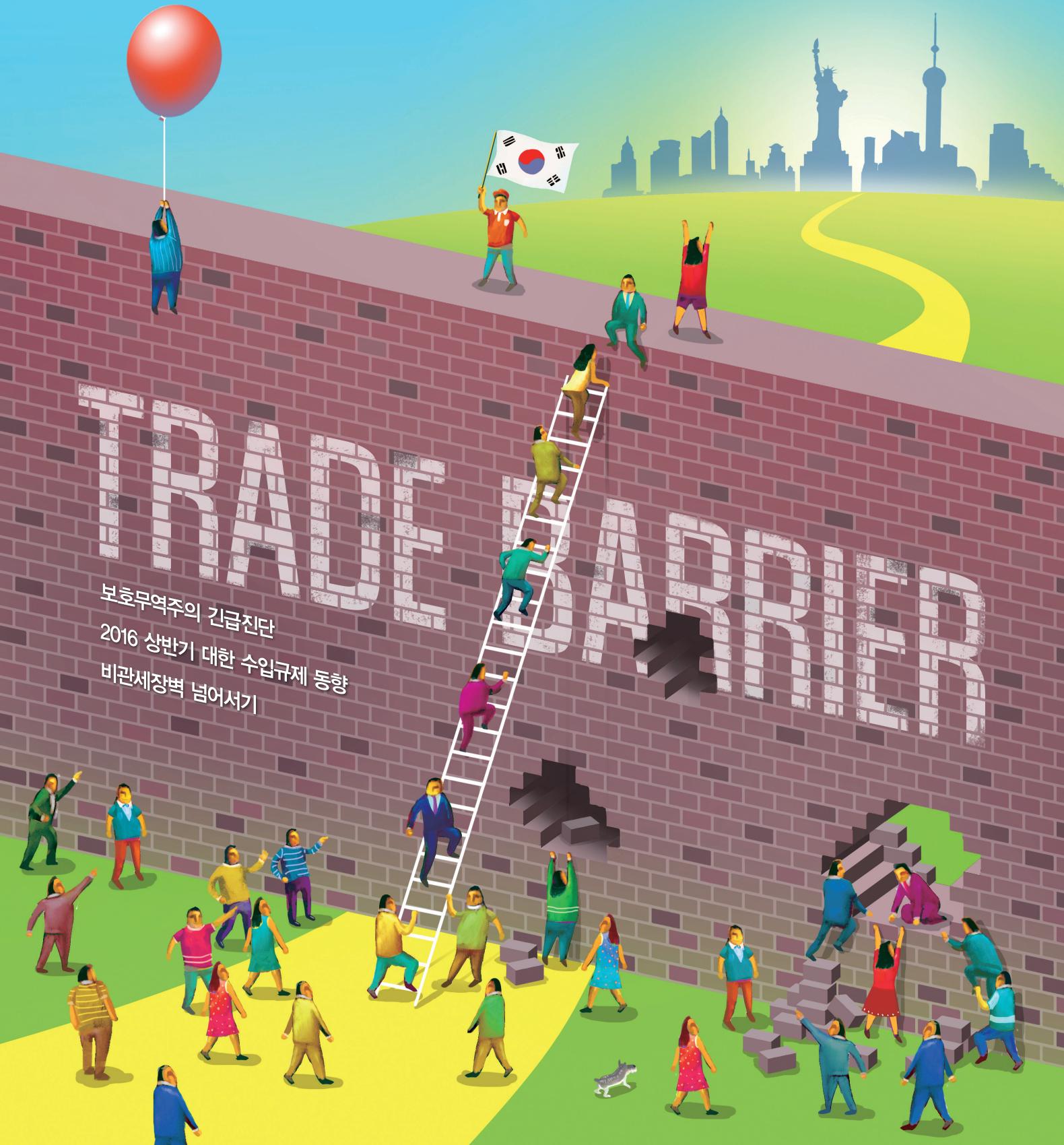




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함께하는 FTA

October 2016 vol.53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T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임기운 센터장

FTA의 최전방 인천에서 중국 진출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난 9월 26일 송도센트럴파크 호텔에서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한 '인천·인도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수출상담회에는 인천시가 그동안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전략 산업을 선정, 중점 육성해온 인천시 8대 전략산업 기업을 위주로 인천·인도기업 간 수출 상담을 준비해온 결과물로 인도 바이어 40개 사와 인천기업 80여 개 사가 참여해 1:1 수출상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장에서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임기운 센터장을 만났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한·EU, 한·미 FTA가 잇따라 체결·발효되면서 이들 지역과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되고, 인천이 최근 20년 사이 부산항보다 물동량이 7배 이상 증가하는 등 물류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천FTA활용지원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임기운 센터장은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정부와 지역 내 유관기관과 함께 관내 수출입 업체를 대상으로 FTA 활용에 관한 종합지원을 펼쳐 인천지역 기업의 FTA 체결국가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며 "최근 경제계의 쟁점인 한·중 FTA 체결과 관련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지금까지 한·중 FTA 원산지 관리 교육을 통해 인천기업들의 대중 원산지 관리 능력을 힘양시켜왔다. 또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웹발급 실습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이 직접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모의발급해 보는 전산교육의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했다. 임 센터장은 이와 더불어 중국 수출기업과 그 국내 협력사들의 원산지 관리 역시 함께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기업의 원산지 관리는 국내 협력사의 원산지 관리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협력사의 원산지 (포괄)확인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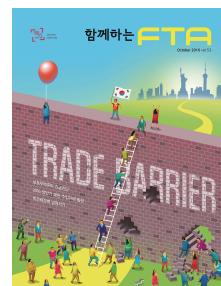
특히 인천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가 발효됨에 따라 올 초부터 '인차이나 센터(INCHINA CENTER)'를 열고 대중국 수출입 업체 대상 한·중 FTA 활용을 종합지원하고 있다. 인차이나 센터는 관내 중소기업 지원은 물론 해당 분야별 전문 컨설팅 인력풀 확보를 통한 종합컨설팅을 연계지원한다. 또한 향후 인천지역 업체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중국경제동향, 성공전략 사례 및 방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품목별 중국시장 동향 및 정보, 바이어 정보까지 제공하는 등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16

Contents

October 2016 vol.53



COVER STORY

자국 산업 우선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미국
대선주자들이 연일 보호무역을
역설하고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중국마저 무역보복의 위협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한
긴급진단과 향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10월 1일(통권 53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

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People

- 01 인천FTA활용지원센터 임기운 센터장

Issue Focus

- 04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 및 RCEP 제4차 장관회의 결과
06 Global FTA News
08 제4차 통상산업포럼 외

FTA Cartoon

- 10 우리 농산물, 무역장벽을 넘어 세계로 뻗어갑니다!
안종만

Cover Story

무역장벽을 넘어서

- 12 보호무역주의 긴급진단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14 2016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16 비관세장벽 넘어서기

Special Report

- 18 뉴욕 한국섬유전 참가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20 인도네시아 시장 집중 분석

FTA & Company

- 24 2016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팀방:
(주)셀바이오텍 & (주)서연이화

FTA Study

- 26 EU 회원국의 GATT 및 WTO 가입 상황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28 실전 품목분류: ② 피부미용기기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중국 신규 화장품안전기준규범에

사용 금지 성분 추가 및 수정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⑦ 중국 지식재산권 형법 I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 36 FTA 사후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 ⑨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Art & Culture

-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② 부분과 전체

FTA News

- 42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외

FTA Square

- 44 FTA 정보&독자의 소리



글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 및 RCEP 제4차 장관회의 결과

한·에콰도르 SECA와 RCEP, 본격적 시장개방 협상 계기 마련

정부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대응하고 유망 수출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한·에콰도르 SECA¹ 및 RCEP 등 최근 진행 중인 협상에 적극 참여했다. 두 개 협상에 참여한 수석 대표를 비롯한 관계부처 담당자들은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과 우리의 교역·투자 확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이 될 수 있도록 협상을 이끌었다.

¹ 에콰도르 측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FTA 용어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양측은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라는 명칭에 합의(내용은 FTA와 동일)하였다.



지난 8월 에콰도르에서 열린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과 알레한드로 디발로스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가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했다.



한·에콰도르 전략적 경제협력 협정(이하 한·에 SECA¹) 제3차 협상이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에콰도르 키토에서 개최되어 2차 상품양허안 교환방식 및 일정과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 등에 합의하였다. 우리 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에콰도르 측은 알레한드로 다발로스 대외무역부 통상협상차관보가 수석 대표로서 협상을 이끌었으며, 우리정부를 대표하여 기재부, 농림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한·에콰도르 SECA 제3차 협상 개최 결과

당초 5월 개최 예정이었던 제3차 협상은 지난 4월 에콰도르에 발생한 강진(사망 654명, 33억불 피해)으로 인해 연기되었으나 7월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면담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합의함에 따라 올 8월 협상이 재개되었다.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금번 협상 전 교환한 제1차 양허안 (offer) 및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자유화율 개선을 위한 2차 양허안(offer) 교환방식 및 교환일정에 합의했다. 특히, 양측은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협정 체결을 위해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상품협정문 본문 및 무역구제 분야 협정문에서도 합의점을 모색했다.

서비스·투자분야는 자유화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여, 이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신속한 협상 진전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제4차 협상 전 서비스 분야에 대한 양허안 교환에 합의하여, 차기

협상부터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규범분야는 협정문 협상에서 향후 논의를 위한 진전을 이뤘다. 이번 협상에서 지재권에 대한 통합협정문을 마련하였으며, 정부 조달 시장개방을 위한 양허 협상계획에 합의했다. 또한, 양측은 원산지, 통관절차, TBT 등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차기 제4차 협상을 10월 중 한국에서 개최하고, 구체적인 장소 및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RCEP 제4차 장관회의 및 제14차 협상 개최 결과

동아시아 지역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RCEP) 협상에서는 지난 제4차 장관회의(8.5, 라오스)를 모멘텀으로 핵심 쟁점인 상품·서비스 시장개방 협상 진전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금번 제14차 공식협상(8.15~19, 베트남)을 통해 세부 진전방안에 대해 참여국 간 심도 있는 협상이 이루어졌다. RCEP은 2013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작년 10차 협상(10월, 부산)부터 상품·서비스·투자 관련 시장접근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왔으나, 발전수준이 다양한 다수 국가들 간 이해가 엇갈려 그간 진전이 더딘 상황이었다.

최대쟁점인 상품 시장접근의 경우, 우리 측은 4차 장관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되 국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절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에 참여국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바, 제14차 협상에서는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접근 개선 관련 주요 원칙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인 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서비스 시장 개방의 경우, 그간 최종 개방수준과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각종 기준설정 필요성에 대해 참여국 간 이견이 대립하였으나, 4차 장관회의에서 최종 개방수준 관련 이견을 일부 축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14차 협상에서 서비스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설정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서비스 자유화 수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참여국들은 금번 협상진전을 바탕으로 금년 예정된 두 차례 공식협상(10월 중국, 12월 인니)을 통해 시장접근 및 협정문 협상에서 이견 축소 및 실질적 진전 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Ukraine]

우크라이나, 서방세력과의 FTA로 경제영토 확장에 나서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부터 구 소련 국가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시작으로 전통적 우방인 CIS 국가 및 구소련의 영향력이 강했던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무관세 협정을 맺어왔다. 그러나 2014년 유로마이단 사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우크라이나 내 친서방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는 본격적으로 탈 러시아 정책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특히 2016년 1월 1일 부로 발효된 EU·우크라이나 간 연합 협정에 의거, EU·우크라이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이 발효되면서 우크라이나는 EU 세력권 가입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우크라이나·캐나다 FTA가 체결돼 현재 양국 의회 비준을 앞두고 있으며, 그 외 이스라엘과도 연내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우크라이나, 서방세력과 경제 협력 강화에 나서는 까닭은?

① 우크라이나 Vs. 러시아 무역 분쟁

우크라이나·EU FTA 발효에 맞서 러시아 정부는 2016년 1월 부로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중단함과 동시에, 우크라이나산 식품 금수조치, 러시아 자국 영토로의 내륙 운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조치에 맞서 자유무역협정 중단 선언, 러시아산 식품 금수조치 등 일련의 조치를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우크라이나는 10억 달러, 러시아는 35억 달러 손실이 예상됨). 즉, 2014년까지 단일국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최대 경제 파트너였던 러시아와의 갈등이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새로운 경험 파트너를 물색하지 않을 수 없는 과제를 안겼다.

② EU와 EEU, 선택의 기로에 놓인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을 통해 독립국가연합(CIS)보다 강력한 통합 조직을 만들 계획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아르메니아 5개국이 EEU에 참여한다. 향후 CIS 전체가 EEU에 가입하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는 CIS 내 고

립상태를 피할 수 없다. 또한, 우크라이나가 EEU에 가입하더라도 내부 국론 분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③ 서방 및 제3세력과 협력을 통한 경제영토 확장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내전 이후 우크라이나 경제는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되었다. 이미 IMF, EBRD 등을 통해 서방세력이 경제적 원조를 지원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CIS 국가가 아닌 서방세력 및 제3세력들과 협력 확대를 통해 새로운 경제영토를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시사점

우크라이나에 친 러시아 정권이 들어서지 않는 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주의 정책상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우크라이나 정권은 2020년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목표로 각종 법제도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군사·무역 갈등으로 인한 무역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협력 파트너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제조업 기반이 약하고 전통적 농업국가인 우크라이나가 부가가치 높은 선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과의 FTA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❶



[Ecuador]

한·에콰도르 SECA, 현지 언론 대부분 긍정적 보도



2015년 8월 25일, 에콰도르와 한국은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에콰도르 SEC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했다. SECA(Strategic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는 에콰도르가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대신 다른 이름으로 대체할 것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으로, 내용은 FTA와 동일하다.

정부 매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언론, SECA 긍정적으로 보도

에콰도르 최대 일간지 중 하나인 El Universo는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이 키토에서 개최된다고 알리면서 이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협상이 타결되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과 무역, 투자, 경제, 기술 등 많은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2015년 기준, 에콰도르는 한국으로 석유, 새우, 바나나 등 2억 4000만 달러를 수출했다고 언급했으며, 한국과의 무역에서 에콰도르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중남미 지역 통신사인 Andes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 에콰도르의 대한국 수출은 2010~2015년 80% 이상 증가했으며 바나나, 새우, 생선, 과일 등이 주요 수출품이라고 전했다. 한·에콰도르 SECA는 단순 무역협정이 아니라 한국의 지식과 기술이 이전되고,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미래지향적이고 전략적인 협정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반대 입장의 특정 언론과 국내 산업협회

대부분의 언론들이 한·에콰도르 협상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나, 경제일간지 El Comercio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걱정하는 에콰도르 산업계'라는 자극적인 기사제목을 쓰면서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 소식을 알렸다. 한국을 아시아의 용(Dragon Asiatico)으로 표현하면서, 에콰도르가 한국과 자유무역을 조건으로 경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요지로 보도하고 있다. 대부분의 현지 언론은 한·에콰도르 SECA 3차 협상을 짧고 긍정적인 뉴스로 보도했다. 특정 언론과 현지 산업협회는 한국과의 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에콰도르 국내 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보도하며, 한국과의 통상협정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에콰도르 섬유 산업협회의 경우처럼 무역자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측은 추가 설명자료나 보도자료를 통해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이번 포럼에 참석한 업계는 종합토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TPP를 비롯한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했다.



지상중계: ① 제4차 통상산업포럼

글로벌 스탠다드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 단호히 대처

지난 8월 30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통상산업포럼에서 경제단체·업종별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와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통상산업포럼에서는 세계교역축소와 보호무역주의가 우려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해외의 보호무역조치와 각국의 비준 전망 등 TPP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해결책을 공동 모색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인호 무역협회 회장(통상산업포럼 공동위원장)은 인사를 통해 세계 교역의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의 전환점에서 우리의 활로와 대안은 무역임을 강조하고, 보호무역과 신고립주의로 인한 우리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신시장이자 새로운 기회가 되어 줄 TPP, RCEP의 양대 메가 FTA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보호무역조치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응”하고, 구체적인 통상정책방향으로 첫째, ‘주요국과의 전략적인 통상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둘째, ‘WTO 등 다자 채널을 통한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자유무역 지지를 확산’하며, 셋째, ‘중미·이스라엘 등 유망 신흥국과의 FTA 협상을 가속화’하고, ‘RCEP, TPP 등 메가 FTA를 통한 통상질서 재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신시장 창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TPP에 관해서는 “주요국 TPP 비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규 시장 확보와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업계는 종합토론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총력 대응, TPP를 비롯한 FTA 네트워크 확대 등 정부의 노력을 적극 환영했다. 먼저, 보호무역에 대한 통상외교 활용 및 민관공동의 대응을 강조하면서 ‘한·중 국가 표준체계 공동연구’, ‘중국 등 주요국과의 시험 성적서 상호인정 해결’,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 개최’ 지원 등을 요청했다. FTA 추진방향과 관련해서는, ‘한중 서비스투자 협상 추진’, ‘높은 수준의 RCEP 타결’, ‘신규 FTA 추진’, ‘농축수산물 등 민감품목 대책 마련’ 등을 제안하였고, TPP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민감업종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 TPP 비준 가능성에 대비한 적극적인 준비 필요 등을 건의했다. ☉

지상중계: ②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FTA 협정이행과 주요국 FTA 이행현안 긴급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1일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촉진을 위해 산업부, 관세청 등 유관부처, 업종별 협단체, 통상·무역 지원기관 및 주요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서 서울롯데호텔에서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동향과 △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FTA의 발효 6개월 이행 평가, △정부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공유하고, 업계의 FTA 관련 애로사항 청취와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현재 중미, 에콰도르 등과의 양자 FTA와 RCEP 등 메가 FTA 협상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요구사항 반영을 위해 노력 중임을 언급하고, 아울러, 산업부의 'FTA 활용서비스'를 수출준비 단계부터 수출 성공까지 전주기 지원 종합서비스로 확대하고, FTA전문상담 전화 1380을 수출안내 통합콜센터로 개편, 중국 FTA 활용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FTA 활용 활성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업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발효된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의 FTA 이행도 별다른 이슈 없이 차질없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9개월이 지난 시점상 효과분석은 이르나 무역협회 자체 분석 결과 FTA가 우리 수출에도 일부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16년 상반기 교역 관련 평가]

뉴질랜드 : 2016년 7월까지 수출 10.6% 증가,
뉴질랜드 수입시장 점유율 상승(7위→5위)

베트남 : 2016년 7월까지 수출 10.1% 증가,
베트남 내 수입증가율 한국이 1위(상반기)

중국 :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10.6%) 유지,
FTA 특혜품목이 대중 수출 감소 완화에 기여
(중국의 對韓수입추이: 전품목 -10.1% vs. FTA 수혜품목 -6.7%)

업계는 통관·관세양허 품목 등의 분야에서 애로사항을 건의하였으며, 정부는 수렴한 애로사항을 FTA 이행위 등 산하 이행기구를 통해 상대국에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동 협의회가 산·관·연간 원활한 소통창구로 자리매김 되어, FTA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교환할 수 있는 틀이 되었다"고 평가하고, "지금처럼 수출회복이 절실한 시기에 FTA가 우리 수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FTA 활용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업계의 적극적인 FTA 활용도 거듭 당부했다.❷



우리 농산물, 무역장벽을 넘어 세계로 뻗어갑니다!





무역장벽을 넘어서

보호무역주의 긴급진단
2016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비관세장벽 넘어서기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보호무역주의 간접진단

세계 보호무역주의 계속 확산될 것인가?

선진국과 개도국을 막론하고 자국 산업 우선 보호를 위한
범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조가 실로 무섭다.

한때 2만여 개 수입품목에 대해 최고 40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고 그 결과 국제무역이 66%나 축소했던
1930년대 대공황의 악몽이 떠오를 정도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에 미국의 대선주자들이
연일 보호무역을 역설하고 사드배치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중국마저 무역보복의 위협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현 상황에 대한 긴급진단과 향후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전망이 그야말로 절필하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공화당 대표로 캠페인 활동 중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잠시 보호무역주의 역설을 내려놓고 초강경 반(反)이민정책에 눈을 돌린 지난 9월 초 태평양 건너 의외의 장소에서 낭보가 전해져왔다. 중국 항저우발(發) 소식의 주요 내용은 세계 주요 경제국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여기에 글로벌 저성장 문제까지 긴밀한 공조와 협력으로 극복해나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인 것이 그 골자로 출처는 바로 'G20 항저우 합의(공동성명)' 이른바 '항저우 컨센서스'다.

G20 공동성명으로 한숨 돌린 보호무역주의

본 공동성명에서는 경제 분야에 있어 개방(Openness)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G20 국가들이 함께 보다 더 개방된 경제를 지향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하며, 다자 간 통상체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세계경제의 발전

에 이바지해야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¹ 특히 임기 말 레임덕(lame duck)증후군으로 인해 임기 내 마지막 역작으로 아심차게 추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로기(groggy)상태에 빠져 복잡다기할 수밖에 없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장서서 더 이상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G20 차원에서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한 이번 성명을 이끌어 내며 최후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번 G20 공동성명으로 한숨 돌린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서운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선 아직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실제 브렉시트 이후 미국과 중국은 앞장서서 보호무역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히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상계 관세 등의 부과로 이를 실행에 옮겼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이 비단 몇몇 무역선도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는 사실이며, 이들과 더불어 여타 많은 국가들도 비슷한 태세를 보이거나 보이려 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호

1

이에 대한 본문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Openness. We will work harder to build an open world economy, reject protectionism, promote global trade and investment, including through further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ensure broad-based opportunities through and public support for expanded growth in a globalized economy."

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은 최근 미국의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는 보호무역성 언급에 대하여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며, 보호무역조치의 전염성(contagious)에 대해 우려한 바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

미국 대선 결과 보호무역주의 흐름에 큰 변수될 것

이러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급변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역을 통한 경제발전이나 성장에 대한 일반적 신뢰나 기대가 크게 약해지고 흔들렸다는 사실이다. 한때 자유무역은 개별국가의 경제성장에 큰 동력을 더한 것으로 평가되며 많은 지지를 얻었지만, WTO 차원에서의 디자무역협상인 도하개발아젠다(DDA)가 장기간 표류하고 그 사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온 데다가 이후 회복세를 보였음에도 기대 이하의 저성장 추세가 계속되자 반대급수적으로 보호무역카드가 등장했다는 점은 다시 말해 경기회복에 가시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지금의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보호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핫(hot)한 키워드는 역시 트럼프다. 인기 검색포털에 트럼프를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이 추천될 정도로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선 결과 관련 설문조사 순위가 연일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하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쟁을 이어 가고 있다. 본래 트럼프(trump)는 다이아몬드, 클로버, 하트, 스페이드가 그려진 카드로 하는 서양식

놀이를 뜻하기도 하는데 트럼프 후보는 연일 '보호주의' 패만을 고집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트럼프의 무서운 상승세가 심히 우려되는 이유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공약 – TPP중단, NAFTA 및 한·미 FTA 재협상, WTO 탈퇴 가능성 – 이 워낙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트럼프 패(霸)가 대선에서의 패(敗)로 귀결되지 않는 한 국제무역의 한축인 미국으로부터의 보호무역 역시 일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올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희망적인 사실도 있다. 앞서 설명한대로 G20 차원에서 최근의 보호무역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는 점, 그리고 반덤핑 및 보조금 문제 등 비관세장벽 성격의 보호무역조치들과 관련해 최근 가장 민감한 문제를 양산했던 철강에 대한 감산 조항이 해당 성명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같은 기간 중국 내 유지되어온 반(反)자유무역적 정서에 대하여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도 여간 반갑지 않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한미 세탁기 반덤핑 분쟁에서 우리가 최종 승소한 기분 좋은 기억도 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지도부의 방미 기간 중 워싱턴DC 연방회의에서 라이언 하원의장,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엥겔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 지도부가 최근 불어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 역행에 대하여 미국 내 국회 절차가 가진 힘을 역설하며 예외적 원보이스(한 목소리)를 통해 우리를 안심시킨 사례 역시 매우 고무적이다.❷



이번 G20 공동성명으로 한숨 돌린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무서운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해선 아직 절대로 방심할 수 없다.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6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

전 세계 29개국에서 총 169건의 對韓 수입규제 조치 시행

KOTRA에서 최근 <2016 상반기 對韓수입규제 동향과 향후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냈다.

이번 보고서는 국가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향후 각국의 수입규제 방향에 대해 전망했다. 조사 결과 2016년 상반기 신규개시된 규제 대상 중

대부분이 모두 신흥국에서 발생했으며 앞으로 아시아 신흥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규제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6월 말 기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모두 29개국이며, 규제건수는 총 169건에 달한다. EU(유럽연합)와 GCC(걸프협력회의)는 각각 1개 국가로 집계되었다. 작년 말 대비, 규제국가 수는 1개국 감소했으나 전체 규제건수는 3건 증가했으며,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건수도 6건이나 증가했다. 규제 국가는 인도(31건), 미국(21건), 중국(11건), 인도네시아(11건), 브라질(10건), 태국(9건), 터키(9건) 등의 순이며, 이 가운데 미국,캐나다, 일본, 호주, EU를 제외한 신흥국들의 수입규제가 총 126건으로 74.6%의 비중을 차지한다.

주요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국가	인도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태국	터키	호주	캐나다	말레이시아	EU
건수	31	21	11	11	10	9	9	8	8	7	5

주 29개국 중 규제 건수가 5건 이상인 국가 기준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 118건, 세이프가드 44건, 반덤핑, 상계관세 공동 조치가 7건이며, 이중 42건은 현재 조사 진행 중이다.

반덤핑	세이프가드	반덤핑, 상계관세	계
118(24)	44(15)	7(3)	169(42)

주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품목별로는 철강금속 83건, 화학 47건, 섬유 12건, 전기전자 6건, 기타품목 21건이다.

품목	철강/금속	화학	섬유류	전기전자	기타
건수	83(24)	42(7)	12(2)	6(1)	21(8)

주 괄호 안은 조사 중인 건수
기타품목에는 농산물, 자동차, 생활용품 등이 포함돼 있음.

이어 미국, 인도,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에서 23건의 신규 조사를 개시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3건)과 EU(1건)를 제외하면 인도(6건), 태국(3건), 말레이시아(2건), 대만(2건), GCC(2건), 남아공, 멕시코, 베트남, 터키(각 1건) 등 신흥국에서 19건의 규제 조사가 개시되었다. 2016년 상반기에 신규로 규제대상이 된 23건 중 반덤핑 조사가 17건으로 압도적이며, 6건은 세이프가드 조사, 1건은 반덤핑, 상계관세 조사다. 품목별로는 전체 규제대상 품목 비중과 마찬가지로 철강금속제품(17건)과 화학제품(2건)에 대한 수입규제 제소 건이 대부분이었으며, 전기전자 및 섬유(각 1건), 기타(2건) 품목도 포함되었다.

하반기 철강제품과 화학제품 규제 집중될 전망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를 운영 중인 미국과 EU, 태국에서는 철강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신흥국(특히,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철강 수입모니터링 및 분석시스템> 운영 중이며, 상무부 내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인력 연내 38명 증원 예정

베트남 칼라도색 아연도금강판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서 접수



<u>태국</u>	철강제품을 '민감품목'으로 분류하여 철강제품 가격을 일단위로 '모니터링'
<u>파키스탄</u>	한국 및 중국산 백판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예정
<u>EU</u>	올해 4월부터 역외산 <철강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하여 2020년까지 시행 예정
<u>GCC</u>	자국 산업보호와 제조업 육성을 위해 철강, 화학 분야 규제가능성 상존 또한 불공정무역이 아니라도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이프가드 조치는 물론, 소비재 수입억제 정책, 수입허가, 기술규제(TBT) 등의 비관세장벽도 더 높아질 전망이다.
<u>대만</u>	세탁기, 수도꼭지 등 11개 품목에 '절수인증마크' 취득 의무화 추진 중
<u>말레이시아</u>	'할랄산업' 분야(식품, 화장품, 의약품) 및 자국산 기반이 취약한 분야(자동차와 가전)에 대한 규제 강화
<u>멕시코</u>	한국산 냉연강판에 수입쿼터 적용 중
<u>베트남</u>	2016년 하반기부터 2500cc 초과 수입 승용차의 특별소비세 인상
<u>아르헨티나</u>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신발 등 1581개 품목에 수입허가제(LNA) 시행
<u>에콰도르</u>	자동차 및 휴대폰에 수입쿼터 적용, 무역수지보호 목적의 추가관세 1년 연장
<u>이집트</u>	〈수출자 공장등록제〉, 소비재 품목에 일괄 관세인상조치 등 시행
<u>인도네시아</u>	특정품목의 수입량과 가격을 규제할 수 있는 〈신무역법〉 시행
<u>중국</u>	1개당 3개 브랜드, 9개 제품만 판매 가능토록 한 '조제분유 수입규제조치' 10월부터 시행
<u>터키</u>	수입품에 최저단위가격을 제시하고 수입허가를 발행하는 <수입감시제도> 시행

2016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내역

연번	규제국	품목명	규제유형	조사개시일
1	남아공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16. 3. 24
2	대만	아연 도금/합금 강판	반덤핑	16. 2. 22
		탄소강판	반덤핑	16. 2. 22
3	말레이시아	철근	세이프가드	16. 5. 27
		강선재와 코일철근	세이프가드	16. 5. 27
4	멕시코	페로망간(합금철)	반덤핑	16. 1. 8
5	미국	인동(구리합금제품)	반덤핑	16. 3. 30
		페로바나듐	반덤핑	16. 4. 19
		탄소/합금 강판	반덤핑, 상계관세	16. 4. 29
6	베트남	아연도금강판	반덤핑	16. 3. 3.
		과산화수소	반덤핑	16. 1. 14
		스타이렌 뷰티디엔 고무 (SEF)	반덤핑	16. 1. 14
		탄성 필라멘트사	반덤핑	16. 1. 27
		열연강판	반덤핑	16. 4. 11
		냉연강판	반덤핑	16. 4. 19
		미가공 알루미늄	세이프가드	16. 4. 19
7	인도	스테인리스강관 및 투브	반덤핑	16. 1. 18
		H구조 형강	세이프가드	16. 2. 4
		재압연용 열연강판	반덤핑(품목추가)	16. 2. 4
8	태국	콘크리트 펌프 및 펌프차량	반덤핑	16. 2. 6
9	터키	경량감열지	반덤핑	16. 2. 18
10	EU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15. 12. 31
11	GCC	도금강판	세이프가드	16. 6. 9

*GCC(걸프협력회의):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6개국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2015년 9월, 한국산 신선 과실류 최초로 신선포도의 **對中** 수출이 개시되었다.
2009년부터 중국에 포도 수입 허용을 요청하여 병해충 위험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였다.



비관세장벽 넘어서기

삼계탕과 신선포도, 우리나라 수출길 넓히다

최근 비관세장벽을 넘어 수출길에 오르는 우리 농식품이 늘고 있다. 삼계탕은 중국과의 검역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 6월부터 **對中** 수출을 개시하였으며 신선포도는 역시 검역협상 타결을 발판으로 수출을 확대 중이다. 이처럼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는 신규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하며 전체 농식품 수출에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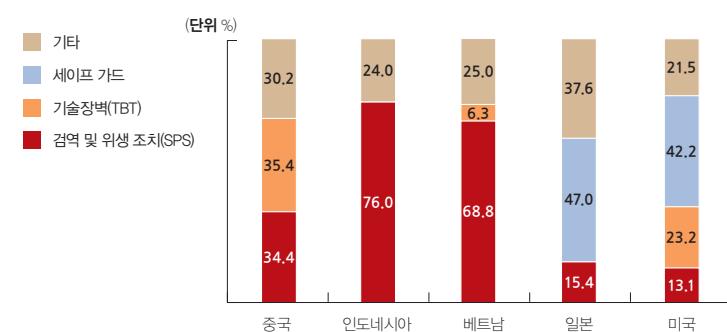
농림수산물 수출동향과 비관세장벽

한국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對日** 농림수산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중국, ASEAN 등 신규 시장에 대한 농림수산물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신규시장으로의 수출 증가는 정부 간 협상과 민관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에 기인한 것으로 농수산물 수출 품목 및 시장 다변화에 기여했다. 농식품 수출은 제품 특성상 각국 고유의 비관세 조치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출기반을 갖고 있어도 수출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 농식품 관련 비관세 조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검역·위생의 경우 수출 대상국별로 통상 8단계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야 수입 허가를 획득할 수 있으며 동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5~10년)된다.

미국 이어 중국 수출길 오른 삼계탕

전통식품인 삼계탕의 **對美** 수출이 2014년 재개된 데 이어 올해 6월부터 **對中** 수출이 정식 개시되었다. 미국, 중국 등으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면서 2012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던 전체 삼계탕 수출도 지난해 회복세를 나타냈다. 1위 수출시장인 일본에서 엔저, 혐한기류 확산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여 2012년부터 수출 규모가 지속 감소하였으나 미국으로의 수출이 본격 재개되며 2015년 984.9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31.4% 증가했다. 삼계탕 수출은 민관협력을 통해 검역·위생 조건에 대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여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수출시장 다변화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지자체 및 수출업체가 협업하여 국내 위생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미국 측이 중시하는 동등성 지위 획득에 성공했다. 미국은 국

주요국 비관세조치 유형별 비중 (2016년 8월 기준)



*SPS와 TBT는 상대국으로부터 비관세조치를 받은 것으로 WTO에 보고한 통보문을 근거로 침계
자료 WTO I-TIP

최근 검역협상 타결 실적

연도	내용
2013	냉이(미국), 토마토(베트남), 배·파프리카(페루) 등 6개국 7개 품목
2014	삼계탕(미국), 배(멕시코), 파프리카(필리핀), 버섯(칠레) 등 9개국 12개 품목
2015	삼계탕·포도(중국), 딸기(캐나다), 할랄 유제품(말레이시아) 등 9개국 13개 품목
2016	한우고기(마카오), 사과·배·모과(인도)

내 업체에 대한 1차 실사에서 동등성 부적합 판정¹을 내렸으나, 정부와 업계가 T/F를 구성해 업체 설비를 개선하고 관련 제도(정부측 수의사 파견, 실험실 검사 등)를 정비해 2차 실사에서 동등성 적합 판정을 받았다. 중국의 경우 2006년 중국정부에 삼계탕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한국정부는 검역·위생조건 완화를 위해 약 10년간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국내적으로는 관련협회 및 수출업체와 함께 T/F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해 왔다. 당초 중국이 주재료인 인삼을 보건식품으로 분류하고 인증을 요구하였으나 5년 이하 인삼에 한해 2012년 9월부터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식품원료로 활용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중국에 대한 해외판로가 확대되는 가운데 향후 EU, 캐나다와의 검역협상이 추가로 타결될 경우 FTA 혜택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출 증가 기대된다.

한국산 신선포도, 과실류 최초 對中 수출 개시

한국산 신선 과실류 최초로 신선포도의 對中 수출이 개시되었다. 2009년부터 중국에 포도 수입 허용을 요청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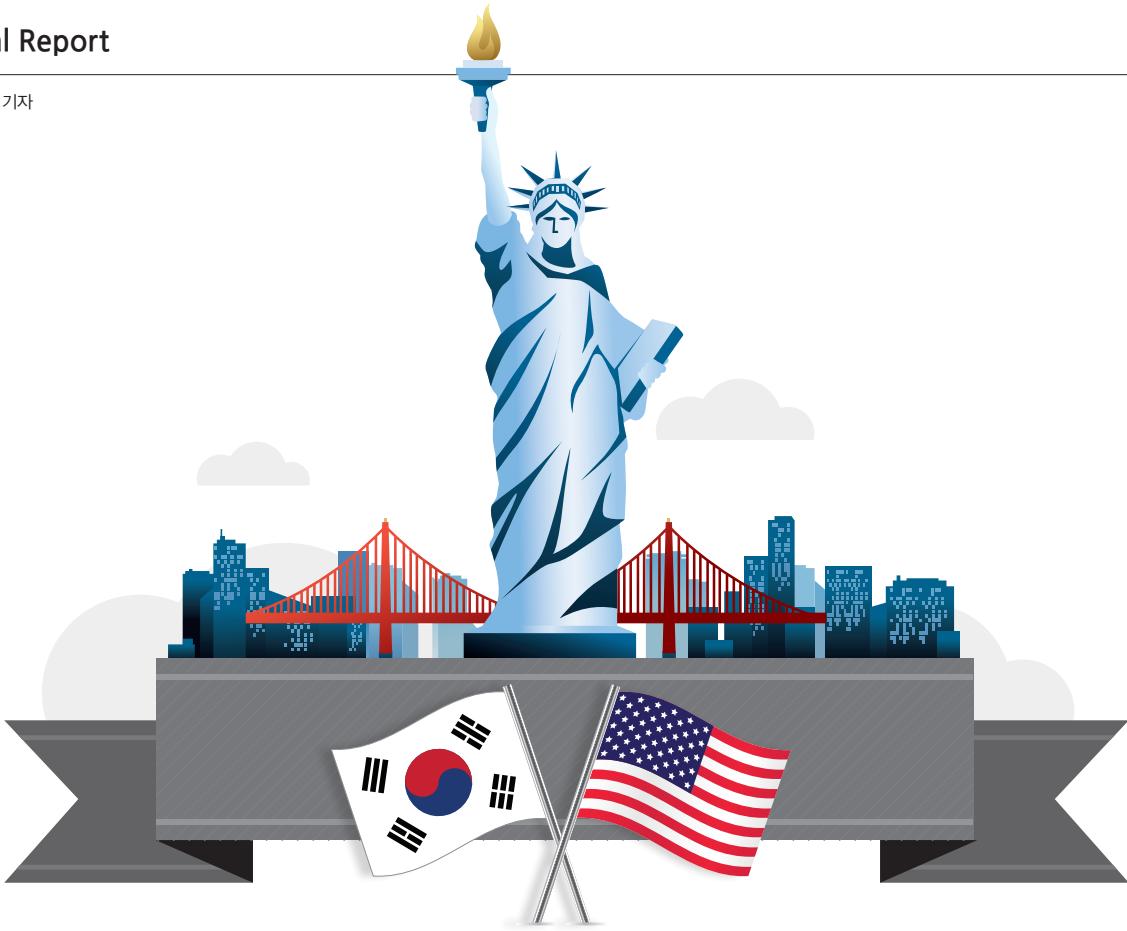
여 병해충 위험평가 및 관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 9월 수출을 시작했다. 포도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수입 위험분석 관리제도' 시행 이후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 국산 신선 과실류의 수출이 이뤄진 최초 사례다. 중국은 2003년 2월부터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를 시행하여 생 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품목은 반드시 중국 측에 수입허가를 요청해야 한다(단, 제도 시행 이전에 상대국이 상업적으로 수출한 실적이 있는 품목은 허용). 검역협상을 통해 비관세장벽이 해소되면서 포도의 수출대상국과 국별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며, 이번 중국시장 진출이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국('05), 캐나다('11), 뉴질랜드·호주('12), 중국('15) 등 주요 수입국과의 검역협상이 잇달아 타결되면서 포도 수출 규모는 對美 수출개시 직전인 2004년 21.1만 달러에서 2015년 328.4만 달러로 매년 28.4%씩 성장했다. 특히 중국의 포도 수입수요가 최근 5년간 25.4%씩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산 포도는 당도 및 품종에서 중국산 및 미국·칠레산과 차별화가 가능해 향후 수출 확대가능성이 높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거봉은 한국산이 포장 및 수확 후 관리 체계에서 중국산에 비해 우수하며, 캠벨은 중국에서 생산·수입이 이뤄지지 않아 한국산이 유일하다.

향후 농식품 수출 확대를 목표로 비관세장벽을 해소·완화하기 위해서는 FTA에 마련된 주요국과의 비관세장벽 협의 채널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ASEAN과의 추가 협상 및 중국·인도를 포함하는 RCEP 협상을 통해 각국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협정문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개별 기업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부처 간 소통 및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대응해야 할 것이다. 비관세조치는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개별 기업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워 업계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수다. 또한 농식품 수출과 관련된 비관세 조치의 대부분이 검역·위생 관련 조치로 협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계 수요 및 수출규모 등을 고려해 품목별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❶

1 동등성 평가(Equivalence Evaluation) : 수출국의 축산물 위생관리제도가 미국의 제도와 동등한지 여부를 서류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해 평가하여 인정하는 절차로 육류 및 가금류 수입과 관련해 미국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짐.

정리 김선녀 기자

**뉴욕 한국섬유전 참가 바이어 대상 설문조사**

미국 바이어 한·미 FTA 수혜품목 수입액 10% 이상 확대

KOTRA 뉴욕 무역관은 7월 13부터 14일간 개최된 뉴욕 한국섬유전(KPNY)에서 81명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한국 제품의 경쟁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한·미 FTA의 혜택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을 확대했다는 비중은 35.7%에 그쳤으나 확대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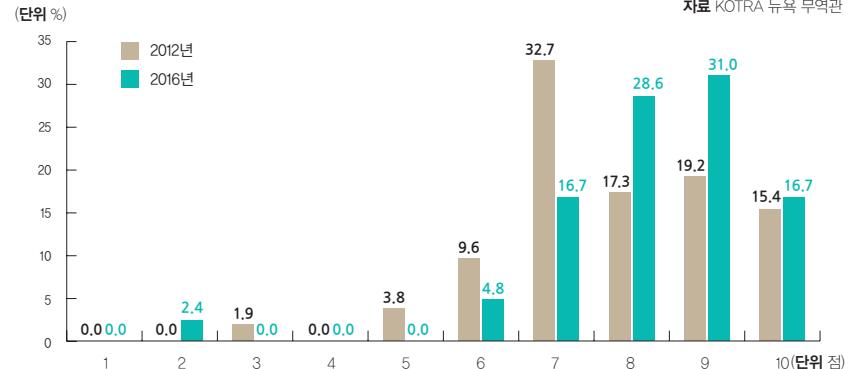
설문 기간 2016년 7월 13일 ~ 14일**설문 응답 바이어** 2016년 뉴욕 한국섬유전(KPNY) 참가 섬유 바이어 81명**설문 방식** 대면 설문조사

한국 제품 바이어들의 만족도는 평균 8.2점으로 4년 전 7.9점 대비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가격경쟁력 부족이 개선해야 할 분야로 나타났다. 한·미 FTA의 혜택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린 바이어의 비율과 한·미 FTA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지난 4년간 대한 수입을 늘렸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38%, 33% 정도였으나, 이들의 수입 확대율은 10%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난 4년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새로 시작하거나 수입량을 늘렸다고 응답한 바이어 중 약 70%가 한국 상품의 우수한 디자인과 품질을 그 원인으로 지목했다.

2012~2016년 한국 업체와 상품에 대한 바이어 평가 결과 비교

한국 제품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 가격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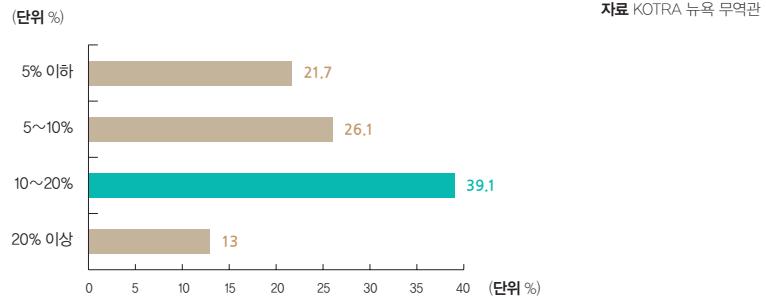
설문 응답 바이어들의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8.2점으로 나타났다. 한국 제품을 수입하는 바이어(43명) 대상 설문, 평가방식은 1~10점에 걸쳐 1점 단위 구간으로 평가되었다(10점 매우 우수, 1점 매우 부실). 2012년 동일한 조사 결과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7.8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4년간 한국 섬유·의류 수출기업과 제품에 대한 바이어들의 만족도가 향상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 제품의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경쟁국 대비 가격이 비교적 높은 것이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바이어들이 한국 제품을 현재 구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은 수가 '가격경쟁력 부족'을 꼽고 있으며, 일부 바이어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도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최소구매수량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과 미국 내 에이전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2012~2016년 한·미 FTA 혜택으로 인한 바이어의 한국 상품 구매 확대율

한·미 FTA의 관세 혜택을 인지하고 있는 바이어의 비율 4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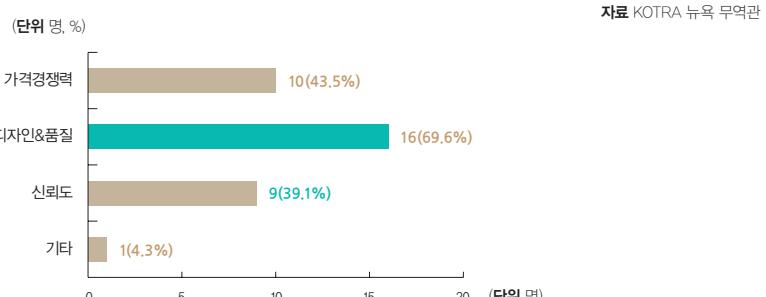
바이어 접촉 시, 한·미 FTA 관세 혜택에 따른 가격경쟁력을 얻기 위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 FTA의 관세 혜택으로 인해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지난 4년간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리거나 신규로 수입을 시작했다고 응답한 바이어는 37.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2.1%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10% 이상 확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미 FTA 혜택을 인지하지 못한 바이어가 한국 상품 구매를 늘린 원인

한국 제품 디자인과 품질에서 좋은 성적

한·미 FTA의 혜택을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한·미 FTA 발효 이후 4년간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을 늘렸다는 바이어는 32.6%였으며, 5~10% 정도 확대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한국으로부터 구매를 늘린 이유로는 디자인과 품질(69.6%)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가격경쟁력을 원인으로 지목한 비중도 43.5%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발효에도 불구하고 한국 상품 구매를 확대하지 않은 이유로는 가격경쟁력 부족(55.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업체에 대한 신뢰도 부족과 한·미 FTA가 한국 섬유의 수요 증대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중도 각각 16.7%를 차지했다. 니트, 우븐, 폴리에스터를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한·미 FTA의 혜택으로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늘렸다고 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았던 반면, 레이온 비스코스, 라이오셀, 모달, 면, 프린트 등을 취급하는 바이어들은 한·미 FTA의 혜택이 한국 제품 구매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변한 비율이 매우 높았다.❷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85%가 따르는 이슬람교는 내세민족 현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적극적인 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인도네시아 시장 집중 분석

인도네시아 소비시장 건강, 할랄, 다국적 음식에 관심 많아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2.5억 명의 인구대국이다.

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의 양적 수준은 물론 질적 수준도 향상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최근 다소 주춤했던 경제성장 또한 회복 조짐을 보이며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동남아 내 인프라 수준 낮아 적극적 투자 필요

인도네시아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동남아 역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미비하며, 교통과 전력 인프라 부족은 제조업 육성과 외국인 투자 유치의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적극적 투자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시장은 2020년에 91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매년 6~7%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이후 경기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과 이를 통한 투자환경 개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으며, 공적재원 부족으로 인해 인프라 부문 민관협력사업 및 외국인 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이에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글로벌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재원조달 역량을 선호하고, 일본 등 건설수주 선진국과 협력하여 공동진출을 확대하는 한편, 한국기업의 수주 지원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2000년 이후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건설시장 진출은 2011년을 기점으로 수주규모가 대폭 상승하였으나 중국과 일본에 건설 수주 및 FDI 규모에서 각각 뒤지고 있으며, 산업설비가 공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인다.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기업 진출 방식을 단순도급 중심의 양적 접근에서 기술력과 고부가가치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수익성 제고 중심모델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소비를 중시하는 적극적 소비성향 강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4.8%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규모는 전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2.5억 명으로 2015년 기준 도시인구는 전체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70.9%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적극적인 소비성향을 지닌 인도네시아인의 구매력이 강화됨에 따라 소비시장 확대가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전체 인구의 약 85%가 따르는 이슬람교는 내세만큼 현세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적극적인 소비성향으로 이어진다. 또한 생활수준 개선에 따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주방 및 욕실 청소용품, 개인 위생용품 등의 TV 광고가 늘어가는 추세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 증가로 전자상거래 시장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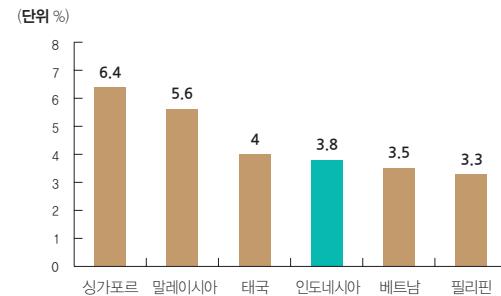
식음료, 화장품,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공략

주목해야 할 주요 분야로는 식음료, 화장품, 헬스케어, 문화콘텐츠가 꼽힌다. 먼저 식음료 시장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10.0%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 1,767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다. 인도네시아는 외식 문화가 발달해 있고 최근 다국적 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추세로 우리 기업들에게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 김, 음료수, 조미료, 양념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신선식품 또한 인기다. 기존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에 집중되어 있던 한국 음식 수요가 다양한 소비자층으로 확대되는 추세로 우리나라 식음료의 현지 시장 진출이 유망해 보인다.

소득 수준 향상과 사회 진출 여성의 증가로 인해 화장품 시장도 괄목할 만 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사회는 전반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 수준은 상당히 높다. 인도네시아 현지 화장품 업체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화장품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고급 브랜드부터 중저가 브랜드 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나 시장점유율은 아직 높지 않은 편이다. 특히 중저가 브랜드의 경우 현지 생산이 아닌 외제품 수출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고급 브랜드와 저가 현지 브랜드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는 것이 주요 해결과제로 꼽힌다.

헬스케어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동남아 주요국가 종합 인프라 지수 (2015~16)



*140개국 평가. 인프라 지수는 7점 만점으로 구성됨
자료 World Economic Forum(2015)

〈인도네시아 식음료 시장의 6가지 키워드〉

- ① **브랜드 선호** Brand Preference
- ② **포장음식** Packaged Foods
- ③ **신선음식** Fresh Foods
- ④ **건강음식** Healthy Foods
- ⑤ **다국적음식** Ethnic Foods
- ⑥ **할랄음식** Halal Foods

있는 분야로 지역·계층 간 인프라 격차가 좁혀지며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월 헬스케어 인프라 개선을 위해 의료 서비스 분야의 외국인 투자 허용 지침을 발표했으며 헬스케어 진출은 연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의약품 공장을 준공하는 등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보다 많은 기회 창출을 위해서는 선진화된 병원 운영 정책과 헬스케어 분야의 전문성 및 경험을 현지 병원들과 공유하며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문화콘텐츠는 우리나라의 장점을 가장 잘 살리면서 인도네시아의 신흥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젊은 층을 공략하기에 적합한 분야로 기대된다. 인도네시아 젊은 층은 한국에 대한 키워드로 '스타일'과 '패션'을 꼽고 있고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해 호의적이다. 한국의 K-pop과 K-drama는 물론 캐릭터와 게임 산업까지 진출해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현재 한류 열풍이 최고점에 다다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기준과 차별화되는 문화콘텐츠 아이템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진출 전략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❷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FAQ

인도네시아 투자, 괜찮을까요?

KOTRA에서는 최근 인도네시아 투자에 대한 가이드를 담은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FAQ〉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에는 투자 방법을 비롯해 조세제도, 현지노무관리, 현지 업체와의 분쟁 해결법 등 시장 진출에 필요한 세세한 질문과 꼼꼼한 답을 제시해 향후 인도네시아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

Q 신규법인 설립 시 초기 투자 비용의 송금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외환관리법상 해외직접투자의 종류에는 외화유가증권 취득, 금전의 대여, 개인사업, 공동사업 참여, 해외지사 설치 등이 있습니다. 금전의 대여는 외화유가증권의 취득을 선행 하여야 하므로 해외직접 투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해외투자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입니다. 외화 유가증권의 취득은 기존에 설립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신규로 법인을 설립하는 형태가 됩니다.

기존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즉 지분의 매도자가 인도네시아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인 경우는 외국환 은행에 가셔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즉시 신고 접수가 되며, 바로 직접 개인 또는 인도네시아 법인에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직 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법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함과 동시에 신고 접수되며, 설립될 회사의 대표나 이사 또는 직원의 인도네시아 은행에 개설된 개인계좌로 송금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법인이 설립된 후에 그 해당 자금이 회사로 입금되었다는 은행 증명이나 현지 회계법인의 확인

을 받아서 신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후 관리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기한부 거주 허가서(KITAS)를 소유하지 않아도 현지은행을 통해 달러계좌 개설이 가능하므로 송금 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 현지법인 명의 혹은 외국인 개인 명의로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가요?

A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급한 기한부거주허가서(KITAS)를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거주목적으로만, 신축건물에 한해서 사용권 토지 위에 건축된 주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소유권 토지 위의 건물을 매입해야 할 경우 '소유권'에서 '사용권'으로 등급을 조정(다운)한 후에 매입이 가능합니다. 자카르타의 경우 외국인이 주택은 20억 루피아, 아파트는 50억 루피아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자투자 형태의 현지법인 명의로 매입 및 보유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는 투자법에서 금하고 있어서 차명 투자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이며, 혹시라도 이를 빌려준 현지인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법에 호소해 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업종은 무엇인가요?

A 인도네시아에는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는 업종을 기술한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4년 개정 후 2016년 5월 재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안은 투자유치가 시급한 인프라 분야와 문화산업, 통신서비스 분야 등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직업훈련 분야 등 자국민 교육·육성 분야의 투자유치에도 역점을 기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광·창조경제, 정보통신, 교통·운송, 보건·의료 분야의 개방이 두드러지며 중소규모 백화점 운영, 통신 콘텐츠 서비스, 인터넷 공급 서비스, 육로 승객 운송, 직업 훈련, 고압·초고압 전기설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지분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경영 관리]

Q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연간 매출액 상 한선은 얼마인가요?



* KOTRA 홈페이지에서 총 59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투자진출 FAQ〉 자료를 무료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A 일반 과세자는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수출포함)하는 자로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Pengusaha Kecil)는 일반 과세자로서의 의무가 없으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 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지위를 선택한 소규모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동일한 의무를 갖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중 연간 매출액이 48억 루피아 이상이 되어 일반 과세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업자는 충족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일반 과세자 변경을 위한 사업 내역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현지 업체의 계약위반이 발생했을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① 민사처리 – 민사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현지인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여야 하며, 양자 간 계약서 상의 거래내역 및 계약서는 어느 나라 법을 적용시키는지(준거법),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느 나라 법원을 가는지(관할권)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계약서 상에 준거법과 관할권에 대한 명시가 없으면 피고지를 관할하는 인도네시아 법원, 피고의 사업장 소재지인 지방법원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형사처리 – 형사 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해 봄아 하는 사안으로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③ 파산처리 – 인도네시아 상업 법원으로 가서 피고를 파산 처리 시키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채권이 있다는 것 이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바이어 발굴]

Q 무역관을 통해 현지 사업파트너 물색 및 시장조사가 가능한가요?

A KOTRA에서는 해외 투자·무역 등을 원하는 한국 기업들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유료 시장 조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시장 조사 – 수출입 동향, 경쟁동향 등 조사가능], 잠재 수입업자 바이어를 발굴하고자 할때 사

용하는 [바이어 찾기], 제조 원료의 공급사를 찾을 수 있는 [원부자재 공급선 조사]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통관 관련]

Q 문의 물품의 관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인도네시아 관세제도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관세 분류방식

인도네시아는 1989년부터 HS 제도를 도입. 총 품목은 종전의 약 5,000개에서 9,100개(HS 9단위를 기준)로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입관세는 일반관세와 아세안 국가에 적용되는 특혜 관세(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의 복수 체계로 되어 있는데, 2006년 이후 한·중·일 등과 FTA가 체결되면서 중·아세안 FTA(2006년), 한·아세안 FTA(2007년), 일·아세안 FTA(2008년) 등 3개의 FTA 관세체계가 추가되었으며 이외에도 ASEAN–Australia and New Zealand FTA, ASEAN–India 등이 있습니다.

B. 관세율

① 관세율의 개략적 체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무역 자유화 정책의 일환으로 1985년 이래 지속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장, 문화·사회적인 관점에서 일부 보호산업·물품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입관세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② 품목별 평균 관세율

수입관세는 수입품 관세 평가액의 0~170%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FTA 체결로對한국 수입제품 관세율은 대부분 면제가 되고 민감 품목군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③ 가공도별 차등관세 적용

소비재의 평균세율은 중간재와 자본재의 2배 이상입니다.

④ 관련 관세 절감 요령 및 특기사항

인도네시아에 투자하는 제조업체는 기계설비 부분은 MASTERLIST 이후 수입되는 자재는 FORM AK, FORM E 등을 사용하여 수입 관세 절감 혹은 면제가 가능합니다.

⑤ 관세율 조회 방법

<http://www.insw.go.id>에서 HS code 별 최신 관세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16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탐방: ①(주)셀바이오텍(우수)

프로바이오틱스, FTA 날개 달고 비상하다



1995년 설립된 셀바이오텍은 세포공학 및 미생물 발효기술을 바탕으로 유산균 종균 개발 및 원말제조, 기능성식품 등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전문기업이다. 셀바이오텍은 FTA 활용으로 수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성공적인 수출로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말한다. 셀바이오텍은 위산에 불안정한 유산균이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단백질 1차 코팅, 다당류 2차 코팅하는 '이중코팅 유산균' 특허기술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90년대 후반 IMF 사태의 충격파로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재고가 누적되자 외환위기로 꽁꽁 얼어버린 국내시장보다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 부도 위기를 돌파하고자 했다. 또한 유럽시장에도 진출했으나 OEM·ODM 방식만으로는 현지 소비자들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는 데 한계를 느꼈다. 결국 1,000마리의 유산균을 농축하는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브랜드를 론칭해 시장공략의 승부수를 띠었다.

세관 컨설팅을 통한 완벽한 시스템 구축

셀바이오텍은 먼저 한·EU FTA를 공략했다. 한·EU FTA 활용은 중장기적인 수익원 확대로 유럽 매출액이 전년 대비 72.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EU 국가별로 진행했던 FDA(식품의약품안전청) 승인 절차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창출로 10배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원산지 전담관리자의 부재와 인증수출자 신청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등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할 수 있었던 키는 바로 세관 컨설팅이었다. 세관 컨설팅을 통해 인증수출자 서류작성 및 원산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검증대비를 위한 관리전담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어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한·중 FTA 활용 준비에도 돌입했다. 올해 초 셀바이오텍의 '듀얼코팅' 기술은 한국, 유럽, 일본, 미국에 이어 중국에서도 특허취득에 성공해 세계특허 5관왕을 달성한 상태였다. 셀바이오텍은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거래신뢰성을 확보하고, 원산지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원산지 판정과 자료관리로 FTA 전반에 유연적인 대처가 가능함으로써 중국이라는 큰 무대로의 진출까지 가능했다. 관세혜택으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며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진출해 매출액은 전년대비 17.2%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도 16.8%까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FTA 활용은 기존 및 신규고객의 가격 인하 기대 요구를 충족시켜 EU 및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셀바이오텍은 FTA를 통한 신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지난 2015년 경제분야에서 기업 또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또한 포브스 아시아 선정, 200대 유명기업 '월드클래스 300'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

2016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기업 팀방: ②(주)서연이화(우수)

전략적 FTA 활용으로 대륙을 정복하다

울산에 위치한 (주)서연이화는 도어트림, 시트 등 300여 종의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을 생산한다. 중국, 미국 등의 FTA 체결국으로 90% 이상을 수출하며 수출 실적은 전체 매출의 70%에 이른다.

(주)서연이화는 업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전략을 통해 중국 해관의 고질적인 관행과 까다로운 협력사 관리에 대한 해답을 얻었다.

(주)서연이화는 FTA를 통한 중국 진출 당시 두 가지 큰 장애에 부딪쳤다. 하나는 HS 코드 상이로 인한 중국해관의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불인정이었다. 다행으로 수출의 경우 HS 코드가 일치해도 중국 수입 서류 품목순서와 원산지증명서 물품내역 순서가 같지 않다는 사유로 특혜세율을 배제하기도 한다.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였다. FTA 특혜세율 사후 적용 신청 물품,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되어 수입통관에 30일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두 번째 장애 요인은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부정확으로 사후검증 위험에 항시 노출되었다는 사실이었다. 중국은 물품 공급사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 (포괄)확인서만을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다. 하지만 협력사 대부분이 중소·영세 기업으로 원산지관리 전담자가 부재하거나 원산지관리능력이 미흡했고, 협력사 경영진의 FTA에 대한 지식 및 관심 역시 부족했다. 또한 유상 사급 거래가 많아 원산지 (포괄)확인서 수취 과정이 매우 복잡했다.

중국 해관의 비효율적 행정시스템, TWO-TRACK 전략으로 해결

먼저 한·중 FTA가 발효되었으나 지방 해관의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과 고질적인 관행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한·중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TWO-TRACK 전략'을 수립했다. 즉 수입 신고 시(사전), 수입 통관 후(사후) 건으로 구분하여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핵심인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울산세관, 관세평가분류원, 한국무역협회 등 FTA 유관 기관을 적극 활용했다.

두 번째 해결방안은 바로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 사후검증의 위험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CEO 대상 교육 1회를 포함해 연 3회 이상 현장방문지도 및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YES FTA 센터의 도움을 받아 전문가와 1:1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한 HS 확인 및 인증수출자 인증을 유도해 원산지확인서 정확성을 검증받았다. 세관장이 중소 제조업체가 작성·발급한 원산지 (포괄)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해 신뢰성을 부여해주는 '세관장 확인제도'를 컨설팅에 적극 활용하기도 했다. 자체교육 → 전문가 컨설팅 → 품목분류 사전심사 → 제3자 확인 및 세관장확인제도 활용으로 이어지는 '기업 3.0 원산지관리 프로세스'는 다수의 협력사를 보유하고 있는 수출업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FTA 교역시대 진입으로 FTA 활용은 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며, 국가별 원산지 증명제도를 철저히 분석해 업체 특성에 맞는 FTA 활용 전략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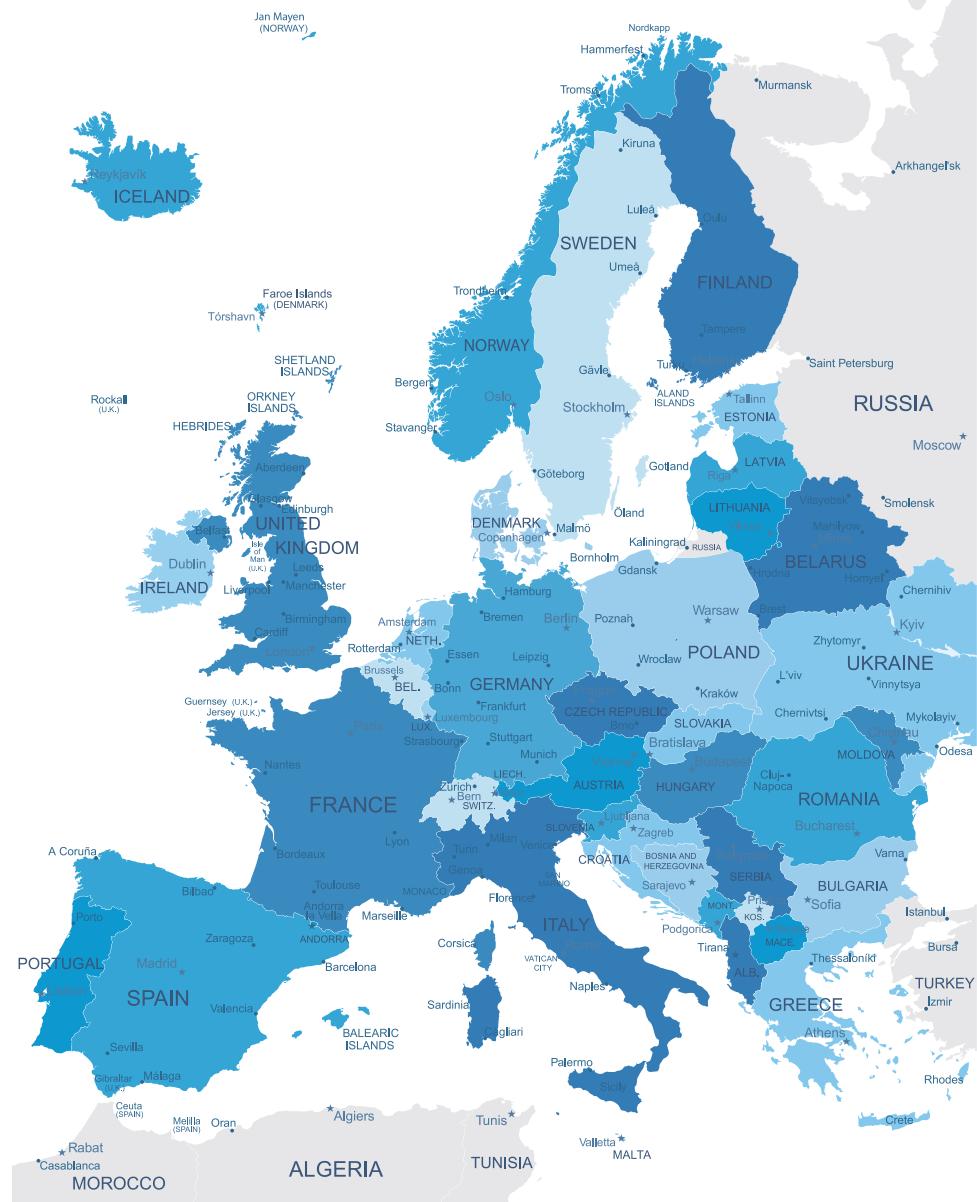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EU 회원국의 GATT 및 WTO 가입 상황

따로 또 같이

작년 12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WTO 다자무역협상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제10차 각료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아프가니스탄과 라이베리아의 신규가입이었다. 두 국가의 합류로 현재 WTO 회원국은 총 164개국. 전체 UN 회원국가가 193개임을 고려할 때에 WTO는 전 세계 약 85%의 국가를 회원으로 하며, 전 세계 교역량의 95% 이상을 총괄하고 있다. 전체 164개 회원국 중 EU의 경우는 자체회원국이 28개국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29개로 WTO에 등록되어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된 영문일까?



WTO 내에서 EU는 EU라는 연합체로서도 회원 자격을 갖고, 28개국 모두가 각각의 국가단위로도 가입되어있다.

GATT와 유럽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시기의 전무후무한 경제난과 1,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통해 현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전신(前身)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1947년 당시 이 협상을 주도하고 최종 서명에까지 이른 국가, 이른바 GATT 창립국 가는 총 23개국이었다.¹ 이들을 기준으로 현재 유럽연합 (European Union, EU)에 속한 국가로는 벨기에, 체코와 슬

로바키아(당시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 7개국으로 만약 당시 영국의 식민지에 속했던, 베마(현 미얀마), 실론(현 스리랑카), 남부로디지아(현 짐바브웨) 등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전체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더 늘어나 국제통상규범인 GATT의 탄생과 참여 주도권의 중심에 EU가 있었음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위 23개국 중에서도 GATT 협정을 잠정적으로 준용하겠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규범을 도입, 타 국가들의 모범을 보였던 국가는 총 8개국에 불과했는데 이들 중 호주,

1

당시 23개 서명국은 남부로디지아, 남아공,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레바논, 룩셈부르크, 미국, 베마, 벨기에, 브라질, 시리아, 실론, 영국, 인도, 중국(현 대만), 체코슬로바키아, 칠레, 캐나다, 쿠바, 파키스탄, 프랑스, 호주(기나다 순)이다.

캐나다, 미국을 제외한 5개국(벨기에,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이 현 EU 국가임을 보면 역시 다시 한 번 유럽이 GATT의 창립뿐만 아니라, 발효 및 초기 정착에까지도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잘 알 수 있다. 이후 WTO가 정식 출범한 1995년 이전까지 GATT의 전체 회원국 수는 128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 EU 국가 중 무려 23개국이 이미 GATT 시절 국제통상체제에 귀속했던 바 있다.²

WTO와 유럽

유럽연합은 1946년 9월 19일 당시 영국의 수상이었던 원스턴 처칠의 유명한 스위스 취리히 연설이 계기가 되어, 이후 1951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 EC)에 이어 2009년 리스본 조약을 거쳐 마침내 지금의 모습으로 탄생했다. 다시 말해, GATT가 발효되던 1948년 당시엔 현재의 EU와 같은 공동체의 모습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유럽이 1995년 WTO 출범 당시에는 지금의 EU는 아니지만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공동체(EC)의 형태로 존재했다. 당시 WTO에 지금의 유럽연합은 EC라는 이름으로 가입하였고, 이것이 이후 EU가 등장하며 정식 명칭의 변경으로 이어졌다.³ 흥미로운 사실은 WTO 내에서 EU는 EU라는 연합체로서도 회원 자격을 갖고, 28개국 모두가 각각의 국가단위로도 가입되어있다는 것이다. WTO 협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카쉬 협정 제 12조에 의거하여 국가 혹은 대외무역관계에 있어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하는 독자적 관세영역(separate customs territory possessing full autonomy in the conduct of its external commercial relations)에 한하여 회원국 자격을 인정, 부여하고 있는데 EU는 하나의 관세동맹(customs union)인 동시에 공동의 관세 및 통상정책을 펼치는 자격을 인정받아 회원국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⁴ 따라서 WTO 체제 하에서 유럽연합은 '연합체(1개)+유럽연합 회원국 28개)=29개국'의 공식에 따라 현재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추후 EU에 가입한다고 자동적으로 WTO에도

가입이 되는 것은 아니다. EU 가입 과정과는 별도로 WTO 가입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아무래도 공동관세구역의 특성상 EU에 가입한다는 것은 보다 수월하게 WTO에 가입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WTO 내에서 각료회의 및 협상 참여, 대변인 역할 등은 EU 위원회가 대표로 한다. 다만 WTO의 의사결정방식 및 투표권 원칙인 1국가 1투표에 따라 EU는 총 28개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의 대외무역정책을 펼치는 EU의 28개 투표권이 28개국 모두의 의사를 공평하고 균형 있게 반영한 28개의 개별 투표권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몇몇 주요 목소리로 죽약된 1개의 목소리로 역할하는지는 분명 고민해 볼 문제다. WTO는 회원국의 개별 대외무역 비중에 근거하여 기구 운영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게 하는데 따라서 EU는 연합체 단위가 아닌 28개 회원국 각각이 납부하고 있다.⁵ WTO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분쟁해결절차에 미국과 함께 가장 많이 모습을 드러낸 국가단위가 바로 EU다. 시안에 따라서는 EU에 속한 개별 국가 단위로 제소, 피소가 이뤄지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역시 공동 대외무역정책을 펼치는 EU의 특성상 그리고 '힘의 논리'에 입각하여 EU 단위로 제소, 피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브렉시트와 EU, 그리고 WTO

영국의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로 그 어느 때보다도 유럽대륙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국제통상체제에서도 영국의 EU 이탈은 여러 가지 난제를 초래한다. 우선 영국은 EU 회원국의 자격으로써 누렸던 각종 FTA 등 무역특혜가 무효화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한 재협상들이 불가피하다. 당장 영국이 그동안 WTO 체제 하에서 누렸던 관세쿼터, 보조금 등의 일정 수준을 EU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 및 적용할 수 있을지도 논의와 첨예한 협상이 필요할 전망이다. 실제 WTO는 영국의 EU 탈퇴를 WTO 신규가입에까지 비교하며 영국이 브렉시트로 무역에서



만 연간 25조원을 손해 볼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 러시아 등 신규 국가가 WTO 체제 재편 등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발휘하는 EU임을 고려하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WTO의 관계 또한 그 귀추가 주목된다.❷

² 현 EU 국가 중 마지막까지 GATT에 가입하지 않았던 국가는 총 5개 국가로 다음과 같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가나다 순).

³ 지금도 WTO의 공식 홈페이지 상에는 European Union이라는 현재 명칭 옆에 '예전 EC라는 의미로 'formerly European Communities'라는 설명이 병기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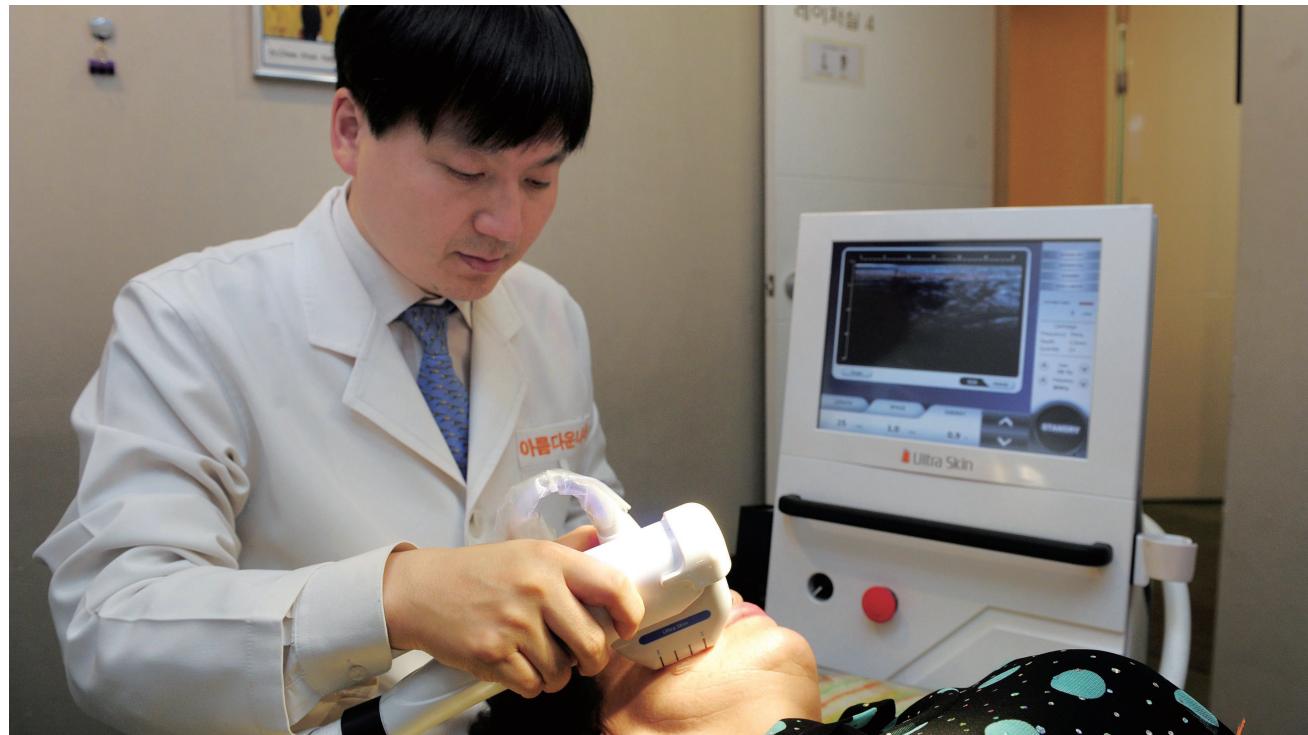
⁴ 참고로 비슷한 형태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나 남미공동시장(MERCOSUR) 등은 EU와 같은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

⁵ 실제 2015년 분담금 내역에서 EU는 0%로 기록되어 있으며, EU내에서는 독일-프랑스-영국 순으로 WTO 분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글 이민선 관세사(Ciel Plus)

사진 한국경제신문

국내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한국미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전 품목분류: ②피부미용기기

병원, 피부관리실 등에서 사용되는 피부미용기는 미용기기일까, 의료용기기일까?

경제소득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피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에 따라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과거와 달리 남성 및 전 연령층으로 피부 및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관세율표상 가정형 미용기기는 HS 8543.70호에 분류되며, 의료용의 기기는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각 HS 코드별 대표적인 분류사례들을 살펴보자.

2014년 관세청의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관심을 끌었던 제품이 있었다. 바로 고주파 자극기. 고주파 전류를 피부에 가해 여드름 및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거나 피부미용에 도움을 주는 전기치료방식이었는데, 고주파 자극기에 대한 주기능을 피부미용으로 보아 '미용기기(HS 8543.7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통증 완화를 주기능으로 보아 '의료용기기(HS 9018.90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피부미용기는 보통 기기의 제조와 사용원리에 따라

고주파 및 저주파 기기, 초음파기기, 썬탠 기기, 레이저기기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위의 사례와 같이 의료기기와의 품목분류에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고주파 자극기가 피부미용에도 사용되지만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고 개인이 구매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용기기(HS 8543.70호)가 아닌 의료용기기(HS 9018.90호)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피부과용 기기

HS 9018.90호에 분류

최근 피부과에서 받는 치료의 대부분은 레이저 시술일 것이다. 문신 제거, 색소 질환(기미, 잡티 등) 치료, 제모, 여드름 흉터 치료, 주름 개선, 흉터나 상처치료, 피부재생, 지방제거 등 다양한 종류의 레이저 시술이 있으며 시술에 따른 레이저기기의 종류도 상당히 많다. 사실 레이저기는 피부과, 성형외과뿐만 아니라 안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치과 수술 등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렇듯 레이저를 시술 부위에 조사하여 색소 질환부터 제모, 혈관치료까지 피부과의 다양한 시술에 사용되는 레이저기는 의료용으로 특별히 사용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상 피부과용의 레이저 작동식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그밖에, 초음파에 의한 열에너지를 이용하여 피부 프팅(Face lifting), 타이트닝, 피부재생, 지방분해 등에 사용되는 초음파 기기와 물광효과, 여드름치료, 흉터개선, 두피치료 등을 위해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에 도포된 약물의 흡수를 촉진하고 재생을 유도하는 피부자극기 등 병원 등에서 직업상 사용하는 기기들 역시 기타 의료용 기기로서 HS 9018.90호에 분류된다. HS 9018.90호에 분류되는 미용기기의 특징은 주로 병원, 피부관리숍 등에서 사용되며 개인은 구매할 수 없고,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들이라는 것이다.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

HS 8543.70호

최근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빠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훌케어 제품시장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화장용 진동퍼프, 진동클렌저 등 다양한 휴대용 미용기기가 출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렇듯 초음파, 레이저 등을 이용하여 얼굴 근육을 자극하여 필링 및 노폐물 제거, 피부 진정과 탄력 개선, 영양분의 흡수와 미백 등에 도움을 주는 가정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피부관리 미용기기는 소매포장된 상태로 화장품만을 사용하도록 설계, 제작되

는 등 그 사용목적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가정 등에서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전기기기에 해당되는 경우 가정형의 미용기기가 분류되는 HS 8543.70호에 분류된다. 이와 유사하게 전자적인 효과로 두피를 자극하여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두피 깊은 곳까지 침투할 수 있도록 탈모예방 등 두피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품 역시 가정형의 미용기기로 보아 HS 8543.70호에 분류하고 있다. 수출과 달리 이들 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기관의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법상 미용기기 중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고 수입 시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수출 전망 밝은 한국산 미용기기

HS 8543.70호와 HS 9018.90호 이외에, 미용기기의 품목 분류에 혼동을 주는 또 다른 HS 코드로는 마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는 HS 9019.10호가 있다. 그러나 이 호에는 마찰, 진동 등의 동작을 통해 복부, 발, 다리, 등, 팔, 손, 얼굴 등의 신체의 각 부분을 암마하는 장치가 분류된다. 즉,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발마사지 기능을 가진 족욕기, 지압과 진동을 통한 목이나 어깨, 허리 등의 마사지기 등 각종의 암마기기가 분류된다.

피부과, 성형외과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의료시장의 성장으로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으며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국미용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이 생기면서 수출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 제품의 해외시장 점유율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선진국의 고가품목과 중국산 저가 품목 사이에서 품질 좋은 중간 가격대의 한국산 미용기는 FTA 활용효과까지 더한다면 수출 전망이 정말 밝다. 그러나 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해야하는 인증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 통일된 성능표준이 없는 국가도 많고 중국의 CCC제도 등 필요여부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현지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❷

글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중국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사용 금지 성분 270개 추가 및 수정

비관세장벽은 정부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수입품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국가가 수출입에 수반하는 구매 및 판매에 대하여 특권을 행사하는 '국가무역', 국가 또는 정부기관으로 하여금 국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정부조달제도' 외에 '관세평가제도', '수입할당제', '수입과징금', '수입예치금', '무역금융제도' 등이 있다.

중국 화장품, 의료기기, 일반식품 등 기준

더 까다롭고 엄격해져

최근 한·중 간의 냉기류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 예로 국내 한 의료기기 수출 기업 A사는 지난해 7월 중국 수출을 준비하다가 중간에 포기했다. 2015년 5월 27일 새롭게 공포된 CFDA 약품, 의료기기 제품등록 비용표준의 공고에서 3등급 의료기기의 신규 등록비가 무려 308,800위안(한화 약 5,250만원)으로 책정되어 해외 업체의 등록비용 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화장품 분야에서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의 경우 색깔별로 위생허가를 따로 취득해야 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같은 립스틱이라도 색상이 다르면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규정 때문에 최신 유행에 맞는 신제품을 중국에 곧바로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국 기업들의 중론이다. 중국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지난해 12월 23일 〈화장품 안전기술규범(2015)〉을 발표하여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범은 중국 위생부가 2007년도에 발표한 〈화장품위생규범〉의 수정판으로 주로 화장품의 위생물질 안전

의료기기 등록요금표

분류		중국산	수입산
2등급 의료기기	처음 등록요금	성급기관에서 책정	21.09
	변경 등록요금	성급기관에서 책정	4.20
	연장 등록요금 (매 5년)	성급기관에서 책정	4.08
3등급 의료기기	처음 등록요금	15.36	30.88
	변경 등록요금	5.04	5.04
	연장 등록요금 (매 5년)	4.08	4.08
	임상시험 신청비용 (리스크가 높은 의료기기에 한함)	4.32	4.32

단위 만 위안 출처 무역협회 북경지부

① 수입산 의료기기 처음 등록 시 등록요금은 중국 내 상용한 제품의 등록 요금표준에 해외 검사와 관련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출장비를 추가 징수

② 홍콩·마카오·타이완의 의료기기는 수입산 의료기기 등록요금 징수표준 적용

③ 의료기기 등록 시 급행서비스 관련 요금은 별도로 제정



FTA를 통해 관세 수준이 낮아져서 위생 기준, 기술 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수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관리와 화장품 감독관리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장품의 위험물질 관리를 강화하여 중금속 함유량을 조정한 것이다.

- ① 납의 함유량은 기존 40mg/kg에서 10mg/kg으로 하향 조정
- ② 비소 제한량은 기존 10mg/kg에서 2mg/kg으로 하향 조정
- ③ 카드뮴 제한량은 5mg/kg로 신규 추가
- ④ 디옥산은 30mg/kg을 초과해서는 안 됨
- ⑤ 석면은 소량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됨

신규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은 기존의 규범(2007년)에 비해 화장품 사용 금지 성분을 270개 추가하거나 수정(약 20~80% 변경)했다. 사용 금지 성분은 총 1,388개로 기존에 비해 133개가 추가되고 137개를 수정했다. 또한 사용 제한 성분은 47개로 1개 추가되었고 31개 수정, 27개 항목은 삭제되어 한국 화장품 기업들은 반드시 관련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 분유, 조미김 등에 과도한 검역 기준 적용

중국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유형은 과도한 검역 기준이다. 국내 분유 업체들은 지난 6월 비상이 걸렸다. 중국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분유 판매 관련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은 분유업체가 팔 수 있는 브랜드를 3개, 제품 수는 9개로 제한할 계획이다. 판매 가능한 품목을 제한하는 경

우는 있지만 제품 수까지 규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 조치로 한류 열풍을 타고 대중 수출이 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 외 지난 3월 중국 산시(陝西)성으로 수출됐던 한국산 조미김(670kg)이 현지 세관으로부터 전량 반송 조치를 당했다. '중국 위생 기준치의 17배에 달하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는 게 이유였다. 조미김은 가열 처리한 데다 건조 상태로 유통돼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한국이나 미국·EU·일본 등에서는 세균 관련 기준이 아예 없다. 한국의 김 제품이 70여 개국에 수출되고 있지만 세균 수 초과를 이유로 반송된 사례는 중국이 유일하다. 기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지만 기준 자체도 과도하다. 중국 당국은 조미김에서 1g당 3만 CFU(세균 측정 최소 단위)가 넘는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대응 제언

식품안전법,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등 기존 법률의 개정 및 신규 규정 제정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은 중국의 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및 관련 정책 변화를 수시로 파악하여 철저한 사전준비 및 세밀한 대응이 강구되며, 정부는 기존 한·중 FTA 비관세장벽 협상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 현장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의 진입장벽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국입장에서 중국은 결코 포기 할 수 없는 시장이다. 녹록치 않은 중국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시장조사 못지않게 중국의 정책을 읽고 활용하는 안목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❶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⑫중국 지식재산권 형법 I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관한 보호 미비하거나 부족



중국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적 처벌 규정은, 한국과는 달리, 개별 지식재산권 법률에서는 단순히 형사책임 여부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일괄하여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중국 형법은 1979년에 위조상표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권에 관한 형사적 보호조치를 처음으로 시작하였고, 1997년에 전면적인 개정을 통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편 제3장 제7절 제213조 내지 제220조의 8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본격적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중국 형법의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지식재산권 범죄에 관한 개정은 전혀 없었으며, 1997년 이래 개별 지식재산권 법률의 많은 개정과 변화에 따라 개별 지식재산권 법률에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형법의 처벌 규정이 없는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국 형법 개정의 목소리를 있으나, 아직까지 1997년에 개정된 형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형법은 지식재산권 범죄와 관련하여 상표권에 대한 등록상표사칭죄, 등록상표사칭상품판매죄, 등록상표표지불법제조 및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판매죄, 전리권에 대한 전리사칭죄, 저작권에 대한 저작권침해죄, 침권복제품판매죄, 영업비밀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이 죄를 범한 경우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를 각 규정에 따라 법인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있다.

1. 중국 지식재산권 형법 일반

현재 중국 형법은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관련하여 제2편 제3장 제7절에서 등록상표사칭죄(假冒注冊商標罪, 형법 제213조), 등록상표사칭상품판매죄(銷售假冒注冊商標的商品罪, 형법 제214조), 등록상표표지불법제조 및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판매죄(非法制造,銷售非法制造的注冊商標標識罪, 형법 제215조), 전리사칭죄(假冒專利罪, 형법 제216조), 저작권침해죄(侵犯著作權罪, 형법 제217조), 침권복제품판매죄(銷售侵權複製品罪, 형법 제218조), 영업비밀침해죄(侵犯商業秘密罪, 형법 제219조)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범죄는 개별 지식재산권 법률에 따라 크게 상표권 침해범죄, 전리권 침해범죄, 저작권 침해범죄, 영업비밀 침해범죄로 나뉘볼 수 있다.

중국 형법은 지적재산권 범죄에 대하여 상표권, 전리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의 주요영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죄가 중국에서는 형법적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모든 지

식재산권 침해를 범죄로 간주해 형사적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인터넷 확산과 새로운 매체 등의 발달로 나날이 지식재산권의 대상 범위와 복잡성이 확대되고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면, 중국 지식재산권의 형법적 보호는 불완전하고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기존의 상표권, 전리권, 저작권, 영업비밀 이외의 새로운 지식재산권들인 식물신품종, 집적회로배치도설계, 지리적 표시권 등은 여전히 중국에서 형사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2. 구체적인 지식재산권 범죄 규정들

가. 상표권 관련 범죄

중국 형법은 상표법에서 규정한 상표권 침해행위를 모두 범죄로 보지 않으며,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사실상 유사한 상표를 동일한 지정상품에 사용한 경우 등록상표사칭죄, 가짜 등록상표 상품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등록상표사칭상품판매죄, 등록상표 표지를 위조하거나 무단 제조하거나 무단 제조된 등록상표 표지를 판매한 경우 등록상표표지불법제조 및 불법제조등록상표표지판매죄로 규정한다.

상표권 침해 범죄들의 구체적인 행위나 침해 정도에 따라 형사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정도가 (특히) 엄중한 경우', '액수가 비교적 큰 경우', '액수가 대단히 큰 경우' 등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보다 자세하게 2004년 12월에 발표된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서의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해석」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개인은 불법 경영액(불법경영액은 침해 상품의 판매금액과 침해 재고품의 실비를 더한 값으로 계산하거나, 실비를 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고품 수량에 해당 상품의 단가를 곱한 값으로 계산한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이거나 위법 소득액이 3만 위안 이상일 때 기소되며, 법인의 경우에는 불법 경영액과 위법 소득액이 각각 개인의 3배인 15만 위안, 9만 위안 이상일 때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나. 전리권(특허권)에 관한 범죄

한국은 특허권 침해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중국 형법은 전리권(특허권)의 침해를 범죄로 보지 않으

며, 단지 타인의 전리권을 사칭하여 죄질이 엄중한 경우에 전리사칭죄로서만 형사 처벌한다.

전리사칭죄는 단순히 타인의 전리권을 사칭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① 타인의 전리번호를 판매 제품이나 포장에 허가받지 않고 표기하는 행위, ② 광고 혹은 선전물에 타인 전리번호를 허락없이 표기하여 타인의 전리 기술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타인의 전리증명서 등의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등이 처벌된다.

다. 저작권에 관한 범죄

중국 형법은 한국과 달리, '영리목적'을 저작권 침해행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침해행위에 있어서도 복제, 발행, 출판, 제작, 판매 등의 행위 형태 요건을 충족하여야 형사적 처벌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형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법소득이 비교적 크거나 기타 사인이 엄중한 경우, ①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글로 된 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및 녹화 작품, 컴퓨터소프트웨어와 기타 작품을 복제 발행한 경우, ② 타인에게 독점출판권이 있는 도서를 출판한 경우, ③ 녹음, 녹화물 제작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가 제작한 녹음, 녹화물을 복제발행한 경우, ④ 다른 사람의 서명을 가짜로 모방한 미술작품을 제작, 판매한 경우에 저작권 침해죄로 처벌한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따른 권리 침해 복제품임을 명확히 알면서 판매하여 위법소득액이 매우 큰 경우에는 침권복제품판매죄로 처벌된다.

라.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

중국 형법은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실 또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데, 구체적인 침해행위로는 ① 절취, 유혹, 협박,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경우, ② 위 방법으로 획득한 권리자의 영업비밀을 공표, 사용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 ③ 약정을 위반하거나 또는 권리자와 관련 있는 영업비밀유지의 요구를 위반하고, 자신의 수중에 있는 영업비밀을 공표,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한 경우가 있다. 또한 위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 것을 명확히 알거나 알았어야 했음에도 타인의 영업비밀을 획득, 사용하거나 공표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한다.❷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페루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 변경 원산지 증명서 발급 위해 인증 취득할 필요 없어져

2011년 8월 1일에 발효된 한·페루 FTA에서 사용되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이 2016년 8월 1일부터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과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



1. 발급방식 변경 근거

한·페루 FTA에서는 협정문 본문 제4장 '원산지 절차'에서 원산지 증명방식, 특혜관세 신청 절차, 원산지 검증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본문 상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으로 자율발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제4.1조 원산지증명서〉

(중략)

4. 각 당사국은,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한·페루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과 관련하여 부속서 4가 '원산지 증명'에서는 기관발급 방식 및 인증수출자 제도 등 자율발급 방식의 병행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관발급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수출금액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 및 인증수출자에 대해서는 원산지 신고 방식에 의한 발급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제4장 부속서 4가〉

규칙 1: 원산지 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 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세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 증명서**, 또는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원산지 증명서

1.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출자의 책임 하에 있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발급방식만 놓고 보면 본문 상의 내용과 부속서 상의 내용이 상충된다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협정문 본문 제4.13조 '이행'에서는 다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제4.1조 원산지증명서〉

- 이 협정이 **발효한 날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부속서 4가는 제4.1조 및 제4.6조를 대신하여 적용된다.**¹⁾
- 제1항에 언급된 기간 이후에는, **제4.1조 및 제4.6조가 부속서 4가를 대신하여 적용된다.**

1) 부속서 4가에 따라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는 제4.1조와 제4.6조가 적용되기 시작한 연도의 마지막 날까지 양 당사국에 의해서 인정된다. 부속서 4가의 규칙 6에 언급된 인 및 수입기관은 부속서 4가의 적용이 중지되더라도 거기에 언급된 문서를 보관한다.

* 이는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서 단순 참고 목적이며, 법적인 효력이 없음을 밝힙니다.

The image shows two pages of the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The left page (Part 4-1) is the 'Korea-Peru Free Trade Agreement' form, which includes sections for Exporter's Name and Address, Importer's Name and Address, Description of Goods, and Remarks. The right page (Part 4-2) is the 'Declaration of Origin' form, which includes sections for Blanket Period, Classification of Origin, Producer/Value Test, Country of Origin, and Remarks. Both forms contain detailed explanatory text in Korean and English.

즉, 상기 규정과 같이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협정발효일인 2011년 8월 1일부터 2016년 7월 31일까지는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방식을 병행하던 것이, 2016년 8월 1일부터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단일화되었다. 다음은 기간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및 근거서식이다.

구 분	2011. 8. 1 ~ 2016. 7. 31	2016. 8. 1 이후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 (부록 4가-1)	폐지
자율 발급	원산지신고서 (부록 4가-2)	원산지증명서 (부속서 4나)

2. 변경 내용 및 특징

1) 원산지 증명 방식 및 양식 단일화

상기와 같이 발급방식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인증수출자 및 일정 금액 이하의 수출 건에 대해서는 자율발급이 가능하였으나, 협정 적용을 위해 인정되는 원산지 증명서(신고서) 양식이 상이하였다. 변경 이전에는 원산지 신고서 방식으로,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 상에 신고문안을 기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양식은 원산지 신고서 방식이 아니라 '부속서 4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된다.

2)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불필요

이전 방식에서는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통해 미화 2천불 이상의 수출 건에 대해서도 자율발급이 가능했었으나, 2016년 8월 1일부터는 수출금액 및 인증수출자 취득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변경된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한·페루 FTA에 대해 품목별 인증을 취득할 실의이 없어진다. 협정에서 규정하는 인증수출자 제도 자체도 협정문 본문에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속서 4가'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이므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 근거가 부속서가 아닌 본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을 위해 인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3) 포괄증명 가능

변경 이전에는 기관발급 및 원산지 신고방식에 의해 매 수출 건별로 원산지 증명서 및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6년 8월 1일부터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의거하여 한 번의 발급으로 최대 12개월 이내에서 포괄증명이 가능하다. 다만, 변경된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5년간 사용하던 방식이 변경되는 과정이므로 자율발급한 원산지 증명서 양식이 수입국 세관에서 불인정 될 우려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기 바라며, 특히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변경에 대한 관세청 공지에서도 언급됐듯이 페루 일부 세관에서 전자서명 및 인장을 불인정하는 사례가 있으니, 원산지증명서 상 서명은 전자서명 등이 아닌 자필서명할 것을 권고한다.❷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 IV. Additional Information
- V. Evidence/References

한·미 FTA 하에서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IV. 추가 정보
- V. 관련 증빙자료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 ⑨

증빙자료, 소명자료 순서에 맞춰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 한·미 FTA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호에서는 마지막 부분인 'V. Evidence/References(관련 증빙자료)'에 대해 알아보자.

관련 증빙자료 작성의 포인트는 검증소명자료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제 자료들을 순서에 맞게
구성하는 것이다.

연재 초반에서도 설명하였듯이 소명자료의 본문에는 FTA 활용의 기본요건 및 FTA 원산지 물품임을 입증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요약하여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다.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나 데이터를 캡처하거나 일부 삽입하는 수준으로 자료를 구성하여 검증요원이 보기에 논리의 흐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목차 I.부터 IV.까지 대략적인 자료의 양은 I. 회사소개 : 2~3 pages, II. CBP가 요청한 자료에 대한 설명 : 7~10 pages, III. FTA 원산지결정기준 총족에 대한 설명 : 2~3 pages, IV. 기타 : 2~3 pages 정도로 구성하여 총 20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비교적 간단한 자료를 완성하기 위해선 관련 증빙서류를 본문 내에 넣지 않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본문 내에 관련 증명서류가 있음을 표시하고 이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소명자료 처음에 수출자에 대하여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증명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소명자료 본문에 해당 자료를 포함시키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다.

Business Registration Document

- Name of company : oooooo
-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 000-00-00000
- Name of representative : ooo
- Business type : Manufacturing / trade

▶ Refer to att. # 01 :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사업자등록증 상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고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att.#01로 표기하고 이를 참조하도록 표시하는 것이다.

att.#01

사업자등록증명 Certificate of Business Registration (법인사업자) (Corporate Taxpayer)	
발급번호 Issuance number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상호(법인명) Business name	(법인등록번호)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개인명(대표자) Name of representative	주민등록번호 Resident (Corporation) registration number
사업장소재지 Address	경기
제작일 Date of business commencement	1999
등록일 Date of business registration	1999
업종 Business type	도매 Whol
종목 Business item	수출 Export 판구 Manufacture

검증요원은 우선 소명자료의 본문내용 전체를 읽고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한 다음 해당 증빙자료를 찾아보고 본문내용과 비교하게 될 것이다.

att.#02

발행제공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제작일 Date of Origin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att.#03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AFTER EXPORTING,A)	
USD 1,050,4600 Number of Subsidy	처리기간 Processing Period 즉시 Immediately
<input checked="" type="radio"/> Declarent <input type="radio"/> Export <input type="radio"/> Clearance <input type="radio"/> Sale (Address) Name Business use <input type="radio"/> Manufacturer (Address) Place of Origin <input type="radio"/> Buyer (Buyer Code)	Open Bill

다른 모든 첨부자료에도 그림과 같이 번호를 표시하고 소명자료 본문에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표시해준다. 이때 소명자료의 순서에 맞추어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자료에 번호를 부여한 후 소명자료 마지막 부분인 'V. Evidence/References (관련 증빙자료)'에서 예시와 같이 번호순서에 맞추어 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검증 소명자료가 완성되었다. 만약 소명자료와 증빙자료 전체에 페이지 표시를 했다면 관련 페이지를 함께 기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예시

V. Evidence Documents



att,#01 : Business Registration Document (사업자등록증)

att,#02 : A Certification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사본)

att,#03 :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수출신고필증)

att,#04 : Bill of materials (소요원자료명세서)

att,#05-1 ~ att,#05-5 : Raw materials purchase order receipts (원자료 구매내역)

#05-1 : aaaaa

#05-2 : bbbbb

#05-3 : ccccc

#05-4 : dddddd

#05-5 : eeeee

att,#06 : Production Line (제조공정)

att,#07 : Job Order (작업지시서)

att,#08 : Payroll receipt (급여영수증)

att,#09 : Payment for goods (wire transfer receipt) (물품대금 영수증)

att,#10 : Invoice (상업송장)

att,#11 : Packing List (포장명세서)

att,#12 : B/L (선하증권)

att,#13 : Ground shipping receipt (국내운송비 영수증)

att,#14 : Photo of product (물품사진)

이상으로 원산지검증 소명자료 작성방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FTA 원산지검증 소명자료와 증빙자료를 모두 구비하면 최소 100페이지 이상의 자료가 구비되게 된다. 자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힘든 일이지만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검증요원도 힘든 일일 것이다. 항상 검증요원의 입장에서 생각하여 읽기 편하고 논리적이며 자료 간의 오류가 없도록 준비하여야 쉽게 검증에 성공할 수 있음을 명심하자.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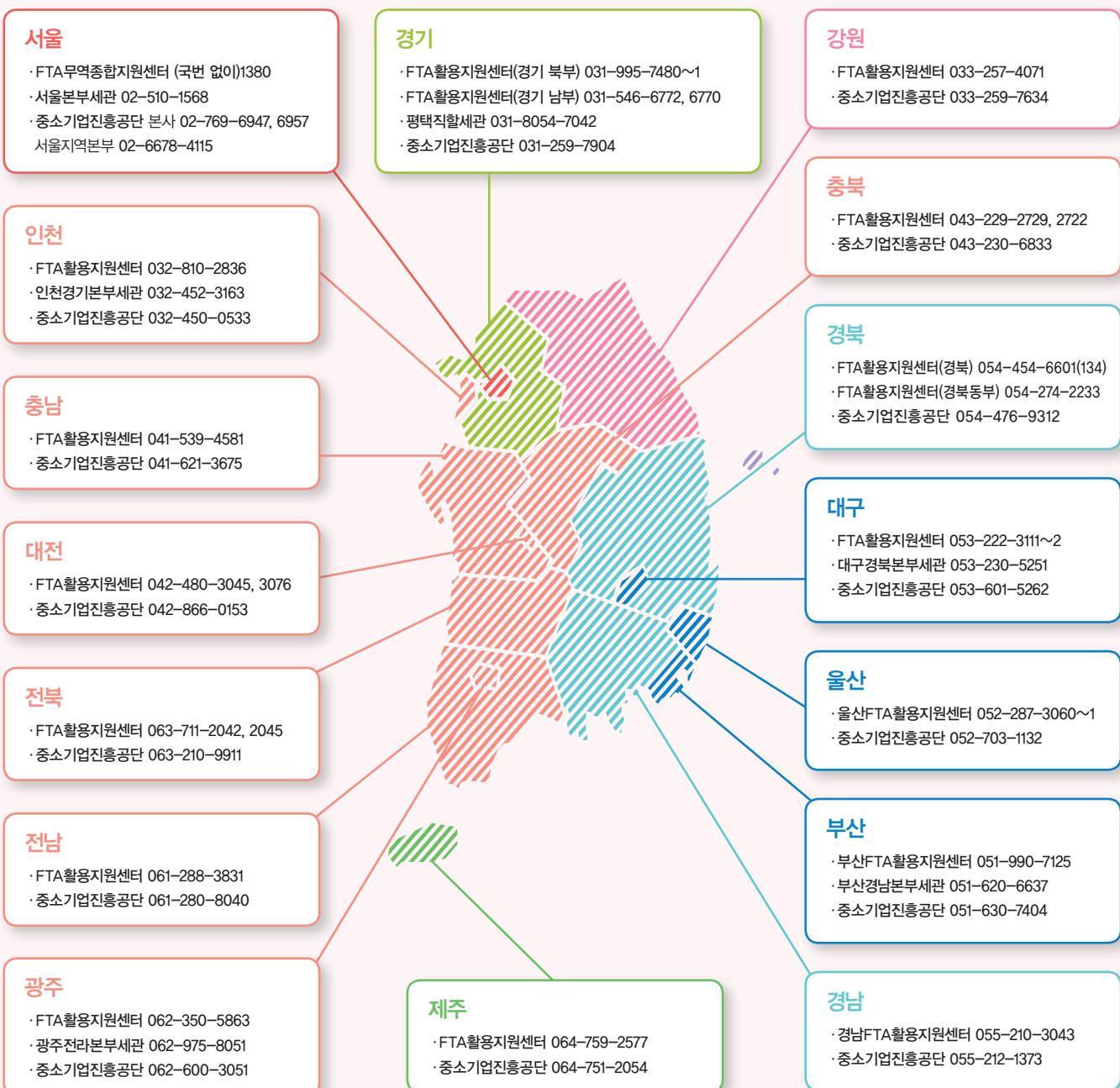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학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히틀러는 핵무기에 집착하지 않고 파멸했지만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다. 하이젠베르크의 신념은 북핵 위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나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일지도 모른다.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㉙부분과 전체

부분은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

독일을 대표하는 물리학자인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는 '불확정성의 원리'로 양자역학을 창시해 현대 물리학의 세계관을 바꿔놓았다. 그는 서른두 살에 노벨상을 받았지만, 히틀러 치하 독일 병기국 우라늄클럽 실무책임자였던 전력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가 가지는 총체적인 연관성과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자 하이젠베르크의 신념은 근본을 소홀히 생각하는 현대인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근본과 전체를 바라보는 하이젠베르크의 종합적 시각

하이젠베르크는 68세 때 자서전적인 과학 에세이인 〈부분과 전체(1969)〉를 썼다. 이 책은 그가 열아홉 살 때 친구들과 도보여행에서 나누었던 대화에서 시작해 그의 과학사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 아놀드 조머펠트와 닐스 보어 등 두 명의 스승을 비롯해 많은 인물들과의 교류에 대해 20편에 걸친 대화체로 구성하고 있다. 시기적으로는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약 50년에 걸친 물리학 발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물리학이나 수학 공식이 아닌 대화와 토론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 내용도 물리학 자체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현대 물리학의 탄생과 발전의 역사, 과학과 종교, 과학과 철학, 과학과 정치, 과학과 예술 등의 주제까지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의 제목인 '부분과 전체'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과학자를 포함한 현대의 모든 학문 연구자들은 18세기부터 분화하기 시작한 학문의 영역 탓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협소한 '전공' 분야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강하다. 세부적인 측면을 자세하고 파고들 수 있을지는 몰라도,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측면은 놓치기 십상인 것이다.

"영국에서는 잘 패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덕에 속합니다. 독일에서는 패한다는 것이 치욕에 속합니다. 물론 그들은 패자에 대해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승자의 덕으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패자가 자기의 패배를 인정한 후 모든 쓰라림을 참아내고 승자에 대하여 의연할 수 있는 패자를 존중합니다."

이 말은 하이젠베르크의 스승인 닐스 보어가 산책하며 들려

준 이야기다. 보어는 “이것은 아마 승자의 관용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 태도를 끝까지 관철하는 패자는 그럼으로써 다시 승자의 위치로 올라가게 된다”고 하이젠베르크에게 들려준다.

과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지난여름에 ‘코펜하겐’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국내에서 상연되었다. 물리학자의 삶과 고뇌가 담긴 내용인데 바로 20세기 물리학을 꽂피운 독일의 베르너 하이젠베르크와 그의 스승인 덴마크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그 주인 공이다. 극은 오랜 연구 동료이자 절친한 사제지간인 두 사람이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적국으로 나뉜 뒤 갈라서야 했던 이야기를 다룬다. 1941년 하이젠베르크는 독일의 핵분열 프로그램을 지휘하는 책임자가 된 반면 보어는 덴마크로 가 힘겹게 삶을 이어나간다.

연극 〈코펜하겐〉은 1941년 9월 말, 아버지와 아들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서게 된 날을 집중 조명한다. 하이젠베르크가 코펜하겐에 있는 보어의 집에 찾아온 그날 두 사람 사이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조국을 위해 원자폭탄 개발 책임자가 된 하이젠베르크는 보어에게 핵분열에 관해 질문했고, 보어는 대답 대신 화를 냈다고 한다. 여기서 핵개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스승을 찾아간 하이젠베르크의 고뇌는 과학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코펜하겐〉은 1998년 영국에서 초연된 뒤 지금까지 약 30여 개국에서 공연되는 작품으로 토니상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하이젠베르크는 제2차 대전의 소용돌이와 그 부산물인 핵개발과 관련해 ‘연구자의 책임’에 대해 우려하고 고뇌 한다. 그는 2차 대전의 와중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망명을 종용한 이탈리아 출신 과학자인 페르미의 제안을 거절하고 독일로 귀국해서 2차 대전을 맞게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파국이 지나간 그때에 더 나은 세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귀국 후 하이젠베르크는 소집영장을 받았는데 베를린의 육군병기국에 출두하라는 명령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다른 물리학자들과 함께 원자 에너지의 기술적인 이용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1901~1976)
독일의 이론물리학자. N.보어의 지도 아래 원자구조론을 검토하여 양자역학의 시초가 되는 연구를 하였으며, 불확정성원리에 대한 연구로 새로운 이론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였다. 그 외 원자핵 분야에 대한 연구 등 여러 연구가 있다.

독일 우라늄계획은 1942년 6월 4일 발표되었는데 이때 하이젠베르크는 이렇게 조언했다고 한다. “원리상으로는 이미 원자폭탄이 제조될 수 있고, 이 폭약도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방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완성하기까지는 아마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수십억이라는 엄청난 기술적 비용이 들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1942년 6월, 원자로 계획에 대한 연구는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되어야 한다고 결정 내리고, 원자폭탄 제조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하이젠베르크는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폭 투하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다. 즉 불행 중 다행으로 히틀러는 1942년 당시에는 원자탄에 집착하지 않았고 결국 핵폭탄을 손에 쥐지 못했다. 히틀러가 원자탄을 만들었다면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세계를 위해 다행스럽게도 핵물리학에서 제3제국(히틀러)의 정책은 권력자 자신에게는 손해를 가져왔다. 정부는 무시무시한 검을 벼를 수 있었던 팔을 스스로 마비시켰던 것이다.”

하이젠베르크는 2차 대전이 끝난 후 1946년 2월 14일 고팅겐 생활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신념대로 막스플랑크 연구소 소장을 맡는 등 전후 독일 과학이 다시 세계에서 주목받는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더욱이 독일 연방방위군을 원자무기로 무장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원자탄을 반대하는 ‘고팅겐 선언(1957년 4월 13일)’을 주도했다.

히틀러는 핵무기에 집착하지 않았고 피멸했다. 북한 김정은은 핵무기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지금 한반도의 현실이다. ‘부분과 전체’라는 제목이 시사하듯이 세세한 부분까지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도 전체가 가지는 총체적인 연관성과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는 과학자 하이젠베르크의 신념은 북핵 위기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정책결정자나 과학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가 아닐까.◎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FTA NEWS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관련 공청회 개최 우리나라 최초의 FTA로 발효 이래 교역액과 수출품목수 크게 증가한 것으로 평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칠레 FTA 성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한 한·칠레 FTA 개선 추진 경과 발표 및 타당성 검토,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9월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통상조약 체결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된 것으로,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주제발표,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부는 한·칠레 FTA 개선 추진경과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FTA인 한·칠레 FTA가 2004년 발효된 이래 교역액이 약 4배, 수출품목수가 약 2.4배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 했음을 평가하였다.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칠레 FTA 개선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인교 교수는 FTA 개선을 통해 양국 관심품목 등 시장접근의 추가자유화와 금융서비스 개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GDP 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서비스·투자·금융·원산지·정부조달 등 규범 측면의 개선, 문화 및 에너지 자원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증진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전문가 토론에는 무역협회 장상식 통상연구실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기수 중남미팀장, 농촌경제연구원 한석호 FTA 지원센터장, KOTRA 김문영 FTA지원팀장이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들은 대체로 FTA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FTA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2년이 경과하는 동안, 많은 FTA가 체결됨에 따라 경쟁여건이 변화했으며, 글로벌 통상규범이 진전되는 등 상황 변화를 반영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상 한·칠레 FTA 개선 관련 국내 절차로 국회보고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몽골 EPA 공동연구 본격 개시 합의 몽골 외교부와 공동연구 세칙 등 협의

지난 7월 박근혜 대통령의 몽골 순방 시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몽골 EPA 공동연구 추진을 본격 합의하게 됨에 따라 정상회담 후속조치 차원에서 금번 면담이 열리게 되었으며, 한·몽골 EPA 공동연구는 핵심개혁과제인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향후 공동연구는 민관합동으로 양국의 국장급 정부 인사를 공동 대표로 하여 수행하고, 통상 1년 정도가 소요된다. 정부는 금번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의 중요 국가인 몽골과 경제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한·몽 EPA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양국은 1990년 수교이후 교역이 270만 달러에서 3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감소 추세로 인해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한·몽골 EPA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교역·투자 등 경제협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이울러 금번 합의된 공동연구 세칙(Terms Of Reference)에 의거하여 EPA 가능성, 무역원활화 등을 포함한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FTA 경험전수(Capacity Building)도 진행하기로 하였다. 김학도 실장은 "금번 공동연구는 2011년 수립된 「한·몽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한·몽 EPA 추진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실장은 한·몽 EPA 관련 면담과는 별도로 바야르마그나이(M.Bayarmagnai) 에너지부 사무차관과 면담하여 에너지 협력체널(한·몽 에너지위원회) 구성, 친환경에너지 탄문 조성, 신재생에너지 사업협력 등 방동 후속조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과 몽골 양국은 9월 22일 몽골 외교부에서 정부 간 면담을 갖고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EPA) 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FTA 이행위원회 개최로 FTA 이행현황 점검 무역구제, 의약품 및 의료기기분야 한·미 FTA 이행위원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분야별 이행위원회(9.20일 무역구제, 9.21일 의약품·의료기기)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등에서 미국 측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DoC), 국제무역위(USITC),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담당관이 참석했다. 무역구제위원회는 2012년 6월, 2013년 11월에 이어 금번 제3차 회의 개최되었으며, 의약품·의료기기위원회는 2012년 7월, 11월, 2013년 11월, 2015년 3월에 이어 금번 제5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상기 2개 위원회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무역구제 위원회는 무역구제 관련 법, 정책, 관행에 대한 변화와 양국의 무역구제 조치 현황 등 상호 관심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는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FTA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양국의 보건의료 제도에 대해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의료기기 관련 기술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양국의 주요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0월 중으로 서비스투자위원회, 전문직서비스 작업반, TBT위원회, 섬유위원회 등 분야별 이행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계획이다.❷



Information

실무자 맞춤형 FTA 활용 전략 설명회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기업실무자들에게 FTA 활용절차 및 금년 벌간한 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상의 FTA 활용 노하우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실무자 맞춤형 FTA 활용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행사 개요 |

- 행사명 실무자 맞춤형 FTA 활용 전략 설명회
- 일시 2016년 10월 17일(월), 14:00~16:30
- 장소 서울 코엑스 3층 컨퍼런스룸 300호
- 대상 FTA 활용업체 및 관심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
- 주최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주요 내용 |

- (공통세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실무 [14:00~16:00]
- (개별세션) 품목별 FTA 활용 전략 [16:00~16:30]

시간	시수	주요 내용	발표
13:40~14:00	20	등록	
(공통세션)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 실무			
14:00~14:10	10	FTA종합지원센터 소개	FTA센터 안병선 대리
14:00~15:00	20	성공적인 FTA 활용을 위한 핵심 실무요령 FTA 체결 현황 및 활용을 위한 기본 원칙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원리	FTA센터 관세사
15:00~15:10	10	Coffee Break	
15:00~16:00	50	효율적인 원산지관리 및 사후검증 대응전략 원산지소명서, 원산지증명서 등 FTA 실무서식 작성방안 협정별 사례를 통한 사후검증 대응전략	FTA센터 관세사
(개별세션) 품목별 FTA 활용 전략			
16:00~16:30	30	품목별 FTA 활용 노하우 및 핵심 Point 삼계탕 / 정류 / 전기밥솥 / 녹즙기 / 고무타이어 / 리튬이온전지 / 기타	FTA센터 관세사
16:30~	–	질의응답 및 1:1 개별상담	

* 개별세션은 품목별로 마련된 개별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

- 홈페이지(www.kita.net 또는 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한 2016년 10월 14일(금)까지(선착순 모집)
- 참가비 무료('품목별 FTA 활용 매뉴얼 책자' 무료 증정)

| 문의처 |

- 담당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 연락처 T. 02-6000-7583 or 7630

※ 행사 당일 주차권이 제공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중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의 이해를 도와주었고, 국제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대만의 노력과 WTO 가입 배경을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대만과 중국 사이에서의 우리의 경제적 입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진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중앙로

'아메리카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다' 기사를 통해 역동적인 신흥시장인 중앙아메리카 6개국과 추진 중인 한·중미 FTA 협상이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기에 타결되어 글로벌 대한민국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미경 부산시 수영구 수영로

세계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아직도 고성장 추세에 있는 인도는 2030년 이후엔 세계 3대 경제대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업들이 인도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치밀하게 세워 나갔으면 합니다.

하길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국내 전자시장이 LCD에서 LED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내수 위주였던 국내 중소기업이 위기를 맞게 되고, 이를 한·중 FTA 활용으로 전화위복한 (주)이오나노켐 사례를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용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함께하는 FTA

October 2016 / vol.53 www.fta.go.kr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E-mail

□□□□□

독자엽서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10월 24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받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9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박차영 전북 남원시 월곡동
하길찬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신도시로 호

이미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이진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중앙로

민선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신촌1길

박재영 경남 거제시 옥포2동

유재범 서울시 관악구 행운1길

강선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동문대로

이용운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심재호 울산광역시 북구 수동중앙길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해외에서 만난 잘못된 대한민국 정보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대한민국을 바로 알려주세요!

www.factsaboutkorea.go.kr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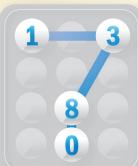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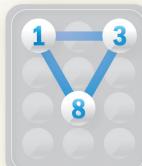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제공해 제공